

보안과제(), 일반과제(O)

과제번호 (2016-2-4)

2016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2016년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창조과학부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16년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 2.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책임자 : 김 현 민 연구 위원

연 구 원 : 허 기 영 부연구위원

이 재 훈 부연구위원

정 희 윤 위촉연구원

이 나 래 위촉연구원 외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2016-2-4	연구기간	2016.2.11. - 2017.2.10.	
연구사업명	사업명	2016년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세부사업명	2016년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과제명	2016년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김현민	총 연구비	150,000 천원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요 약				

1. 연구의 배경

- 저성장 뉴노멀 시대의 돌입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신성장동력 발굴·신산업 육성 절실
- 과학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신기술 제품화·창업·시장진입 등 사업화 저해
- 새로운 혁신의 등장을 대비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이 필요

2. 주요 연구 내용

- 상시적 과학기술 규제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내부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선작업반/규제개선법률전문반 구축 및 운영
- 미래성장동력분야 성장을 위해 필요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규제발굴·선제 대응 체계 마련
- 국가연구개발·기술사업화·기술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 발굴·개선안 제시

3. 주요 연구 결과

- 과학기술 규제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KISTEP 규제개혁센터 내 규제개선법률(안) 제언을 위한 전문가 회의 구성 및 운영
- 검토 후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 개선 실효성 등에 맞게 과학기술 규제 개선 과제 채택
- 규제개선작업반 등 약 30회의 논의를 거쳐 연구관리규정, 기술창업규제, 기술지주회사, 기술 혁신규제, 과학제도규제 등 각 분야별 총 50개의 후보 과제를 발굴
- 이후 심층 분석 및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12건의 과제를 대상과제로 최종확정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에서 「2016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안)」 심의·의결 확정('16.12.9)
- '13-'15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실적에 관한 추적 진행(계속)

색 인 어	한 글	과학기술, 규제개혁, 규제완화, 규제개선, 규제발굴, 규제개선시스템, 규제발굴시스템, 규제정책, 개선방안
	영 어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ion Improvement, Regulation Improvement System, Regulation Policy, Measurement for Improvement

요 약 문

I. 연구의 목적

- 규제개선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
 - 특히,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국가경쟁력의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증
 - 과학기술 혁신 활동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신기술의 제품화 또는 창업, 그리고 시장진입 등 사업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R&D성과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또는 국내·외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나 규정은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따라서 산·학·연 각 과학기술 혁신 주체의 기술사업화·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
 - 기술 분야의 규제 또는 적정기준의 미비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기(失機)를 야기하고 소모적인 비용을 증가시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
- 효과적인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규제 발굴 시스템 및 분석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
 - 법령 위주의 규제개선으로 인해 기업·연구현장 등에서는 규제개선의 파급력·체감도가 미미
 -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시적인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각 분야의 실무자·전문가로부터 개선의 타당성·시급성을 검토할 필요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 내 규제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II. 연구의 방법

-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과학기술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과학 기술 규제발굴
 - (개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규제개선 국민모니터링단 선정·위촉·운영을 통하여 상시적 현장 소통창구를 개설
 - (모집 분야) 과학기술분야 및 ICT(인터넷·정보보호, 통신·방송, SW·콘텐츠, 융합)
 - (활동) 위촉기간 동안 실생활 및 실제 연구 활동에서 규제를 발굴하여 과제 제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부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기술지주회사 관련 덩어리규제*를 파악하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법령 집중 분석
 - * 여러 법령 및 상·하위 규정 등에 걸쳐 규제들이 얽힌 규제 집합
 -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 전반을 일괄 파악하여 단편적 규제개선이 아닌 총체적인 규제 관리를 실현하여 규제개선 효과의 국민 체감도 제고
-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한 분야별 규제개선작업반 구축 및 운영
 - R&D성과창출·유통·활용과 관련된 5대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 내 현장 전문가 및 기업인 등을 초빙하여 작업반 구성
 - 상시적 규제발굴 시스템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부 규제발굴 시스템을 통하여 발굴된 규제에 대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각 분야 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추가 논의
 -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규제 분야별로 ① 연구관리규정 ② 기술창업규제 ③ 기술지주회사 ④ 기술혁신규제 ⑤ 과학제도규제 등 5개 작업반 운영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개선 방안(안) 마련
 - 발굴된 규제개선 후보과제는 법령검토 (규제개선작업반 및 법률지원단) → 부처협의 → 국가과학심의위원회 운영위 심의·의결) →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

Ⅲ. 연구의 내용

1. 과학기술규제 개선과제 발굴 현황

- (과제 발굴) 온오프라인 상시적 과제 발굴 체계 활용 동시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부 규제발굴 시스템 및 법률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및 기사 분석 등 규제개선 작업반을 통해 적극적 규제 발굴
- (과제 선정) 발굴과제는 규제개혁센터 내부 법령검토 및 규제개선작업반의 검토 등을 거친 후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선정 기준에 따라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 이후 부처협의 후 최종 추진 과제로 확정, 이후 부처협의 완료된 과제를 안건으로 상정
 - ※ (제외 기준) ① 타 계획으로 추진 중 ② 외부 발표된 규제개선 사항 ③ 단순 민원성, 정책지원 사항 ④ 추가 심층 분석 필요과제
- (발굴 현황) 다양한 규제 발굴 시스템을 통해 2016년도 총 50개 후보과제 발굴
 - 과학기술 국민 모니터링단 등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부 규제발굴 시스템, 규제개선작업반 등을 통해 발굴
- 이를 과학기술 각 분야로 카테고리화 하여 발굴된 총 50개의 과제 중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분석·검토하여 총 12개의 규제에 대한 개선안 제시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6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안)」 심의·의결(16.12.9)

2. 2016년도 과학기술 규제개선 방안 마련

-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대상과제 발굴 추진
 - 16년 부처협의(미래부 주관) 이후 총 12개 과제 개선 수용 등 검토 및 확정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 완료

〈 2016년도 과학기술 규제개선 주요 추진과제〉

추진과제		관계부처
①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10건)		
기획·과제선정	① R&D사업 선정단계 시 제출서식 간소화	미래부
연구비 등 관리	② R&D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미래부, 산업부 등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유효기간 폐지	미래부
	④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집행비율 완화	미래부
	⑤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폐지	미래부
	⑥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비 부담방식 개선	미래부
	⑦ 창업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미래부
	⑧ 연구행정인력의 인건비 집행기준 개선	미래부
	성과 관리	⑨ 국가연구개발 유형적 성과 소유권 명확화
⑩ 출연연 주요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비 개선		미래부
② 기술창업·사업화 촉진 및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2건)		
기술 사업화 촉진	⑪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보유율 규정 완화	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⑫ 천연화장품 정의·기준 및 규정 공백 제거	식약처

3.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실적 이행점검 진행

○ 2013년도 추진 실적

- (실적) 총 18개 과제 모두 완료

추진과제		주관 부처·부서	현황
①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4개)			
①	법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②	네거티브 방식의 연구비 관리기준 마련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③	연구비 집행 간소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④	유사·중복 행정절차 통·폐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② 신산업·신시장 창출 (5개)			
신산업 진입규제 해소			
⑤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정비 * 「의료기기의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완료
⑥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정비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완료
⑦	방위산업 분야 국산SW 역차별 제도개선	방사청 (회계제도담당관)	완료
⑧	IT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	완료
⑨	개인정보보호체계 정비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	완료
③ 기술창업 촉진 (3개)			
⑩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제도 개선 * 연구개발특구법	미래부 (지역연구진흥과)	완료
⑪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중기청 (기술개발과)	완료
⑫	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의 R&D참여제한 완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	완료
④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 (6개)			
안전규제 강화			
⑬	나노물질 인증 및 평가체계 구축	산업부 (바이오나노과)	완료
⑭	시험성적서 원본제출 의무화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완료

추진과제		주관 부처·부서	현황
출연(연) 규제개선			
⑮	출연(연) 정원관리 합리화	미래부 (연구기관지원팀)	완료
기업 기술인력 규제개선			
⑯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전공제한 완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완료
법령 적용·해석			
⑰	연구실 안전 관련 현장 이중점검 해소 *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법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	완료
⑱	출연(연) 기본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 연구회 「주요사업관리기준」	미래부 (연구기관지원팀)	완료

○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 (실적) 총 21개 과제 중 15개 과제 완료, 5개 추진 중, 2개 추진보류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①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6개)			
①	일반개인의 연구개발 수행자격 허용	미래부 (연구제도과)	추진보류
②	기업의 연구비 처리 등 행정부담 완화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미래부 (연구제도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완료
③	중소기업의 간접비 비율 확대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완료
④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⑤	국제공동R&D사업 협약체결 기간 연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미래부 (연구제도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완료
⑥	우수과제의 집행잔액 이월사용 허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완료
② 신산업·신시장 창출 (10개)			
⑦	스마트카의 일반도로 시험운행 허용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완료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⑧	전기차 주행거리 시험방법 개선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 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산업부 (에너지관리과)	추진중
⑨	자동차 사이드 미러기준 정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추진중
⑩	전기자전거 분류 기준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	추진중
⑪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규정 정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완료
⑫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 생명윤리법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완료
⑬	연구용 난자 허용범위 확대 * 생명윤리법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추진보류
⑭	연구자 임상시험 자료 인정범위 확대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완료
⑮	조건부 인허가 허용범위 확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완료
⑯	산지 경사도 기준 개선	문체부 (관광개발기획과)	완료
③ 기술창업 촉진 (2개)			
⑰	창업기업의 연구과제 신청제한 완화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중기청 (기술개발과)	완료
⑱	벤처확인제도 개선	중기청 (벤처정책과)	완료
④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 (3개)			
⑲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 확대 * 근로기준법	노동부 (임금근로시간팀)	추진중
⑳	해외생산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도 정비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	완료
㉑	신생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제한 완화	기재부 (계약제도과)	완료

viii 2016년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14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 (실적) 총 10개 과제 중 9개 과제 완료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① 기술이전.사업화 (5개)			
지재권 거래 활성화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참여기업 외 실시 요건 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② 지식재산권 양도 가능 범위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융합연구			
	③ 기업의 원천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 조건 완화(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완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완료
	④ 비영리법인의 원천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 조건에 인문계도 포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	완료
대학 기술지주회사			
	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투자조합 "조성"에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로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완료
② 신산업.신시장 창출 (4개)			
첨단자동차			
	⑥ 시험운행용 자동차의 자율조향장치 설치 허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완료
	⑦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제한 완화 검토 * 「자동차 관리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완료
빅데이터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업무의 제3자 위탁 시 동의조항 개선 *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완료
	⑨ 불명확한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이전에 대한 법령 정비 *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완료
③ 기존산업 활성화 (1개)			
여성 창업			
	⑩ 여성가장 창업자금제도 개선 *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요강)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완료

◦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 (실적) 총 12개 과제 중 8개 과제 완료, 4개 추진보류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① 연구관리 (7개)			
해약			
	① 과제해약시 참여연구진 의견청취 절차 마련	미래부 (연구제도과)	추진중
제재조치			
	②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③ 참여제한 기간 산정 방식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추진중
기술료 등 성과확산			
	④ 기술료 미납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⑤ 기술료 의미 혼용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연구개발 성과활용			
	⑥ 기술실시 우선대상기업 범위 확대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완료
	⑦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② 기술혁신 (2개)			
절차개선			
	⑧ 연구용 기자재 관세감면 품목대상 확정 기간 조정	기재부 (관세제도과)	추진중
자동차 산업			
	⑨ 초소형자동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추진중
③ 조달구매 (1개)			
적용 방법			
	⑩ 장비 구매 입찰 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이용 확대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④ 신산업 (2개)			
적용 방법			
	⑪ 소형무인기(초경량비행장치) 분류기준 재정립 검토	국토부 (운항정책과)	완료
	⑫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무인항공기) 검토	국토부 (항공관제과) 국방부	완료

x 2016년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15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 (실적) 총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 완료, 9개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① 제재규정 현실화 및 구체화 (3건)			
① 용도외 사용 인건비 환수 기준 개선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추진중	
② 복수의 연구개발과제 동시 제재 처리기준 마련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추진중	
③ 개인명의 출원·등록시 제재 강화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② 행·재정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 (4건)			
④ 연구개발 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범위 확대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추진중	
⑤ 연구비 잔액 미회수 특례 적용 확대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	완료	
⑥ 학생인건비 변경 승인 의무 완화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⑦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의무 완화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③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3건)			
⑧ 과제평가 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분야 추가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	완료	
⑨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유형 개선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	추진중	
⑩ 연구개발 시제품, 연구노트 소유제도 개선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추진중	
④ 모호한 규정 명확화 (8건)			
⑪ 기술료 미납 시 사업비 추가 환수 폐지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⑫ 연구개발서비스업 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명확화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	완료	
⑬ 연구개발서비스업 간접비 비율 계상 명확화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	완료	
⑭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일 명확화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추진중	
⑮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감점 부여항목 개정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추진중	
⑯ 연구개발과제 기획위원의 선정평가 참여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완료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⑰ 연구개발비와 정부출연금 구분 명확화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⑱ 기업의 분류기준 재정비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 기타 (3건)			
	⑲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개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완료
	⑳ 출연연구원 시간제 초빙연구원 자격기준 완화	미래부 (연구기관지원팀)	추진중
	㉑ 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 제정 신청요건 완화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추진중

IV. 연구의 기대 효과

- 2016년도는 정량적인 규제개선 추진에 매진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 관련 규제 발굴을 유형별로 고르게 발굴 및 개선안 제언에 집중
- '과학기술 규제개선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수단'이라는 인식하에 매년 범정부 차원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지원
-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 및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안 제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범부처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 병행
- 효과적인 규제발굴을 위하여 양방향 규제발굴시스템 인프라 구축
 - 다양한 통로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상향식의 과학기술 규제개선 국민 모니터링단 등을 활용하여 현장 및 국민 의견 수합
 - 분야별 하향식으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분석을 진행하고 규제개선작업반을 운영하여 각 분야별 현장전문가 및 산·학·연 R&D 혁신주체들의 의견을 수합·반영
- 규제개선 성공 창출을 증대하는 규제개선 분석 시스템 구현
 - 분야별로 구체적인 규제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령 분석을 진행하여 규제발굴부터 개선안 도출까지 효율성 제고
 - 공공 및 민간 연구 현장에서 창출된 성과를 활용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달성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환경 구축
 - 현장 전문가를 활용하여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화하여 발굴 규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신뢰 증진
- 다만, 부처 영역에서 과학기술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나 발굴 후 실제 개선은 각 소관 부처의 고유 영역으로, 범부처적인 과학기술 규제발굴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단계라는 구조적인 한계 발생

- 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 규제개선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등이 존재하여, 효과적인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부처 간 조율을 통한 규제개선시스템의 정비 등의 문제 존재
 - 범부처의 협조 하에 과학기술 규제개선 체계 구축을 통한 규제 발굴 및 이를 각 부처에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시에 집중 필요
- 향후 상시적으로 규제발굴 안건을 논의하는 시스템 정착 필요
- 과학기술 규제발굴을 위한 브라운백 세미나 활성화
 - 법령 및 하위규정(고시, 훈령, 지침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회의 형태뿐만 아니라, 서면 등으로 관련 의견 수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V. 핵심어

- 과학기술, 규제개혁, 규제개선, 규제완화, 규제개선시스템, 규제발굴, 규제정책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1. 뉴노멀 시대의 돌입	1
2. 4차 산업혁명의 도래	4
3.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확보	7
제2절 연구 목표 및 추진 방향	10
1. 연구 목표	10
2. 추진 방향	11
제3절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12
제2장 2016년도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추진과제	13
제1절 개요	13
제2절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15
1. R&D사업 선정단계 시 제출서식 간소화	15
2. R&D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15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유효기간 폐지	16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집행비율 완화	17
5.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폐지	17
6.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비 부담방식 개선	18
7. 창업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18
8. 연구행정인력의 인건비 집행기준 개선	19
9. 국가연구개발 유형적 성과 소유권 명확화	20
10. 출연연 주요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비 개선	20
제3절 기술창업·사업화 촉진 및 혁신인프라 강화	22
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보유율 규정 완화	22
2. 천연화장품 정의·기준 및 규정 공백 제거	23
제4절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실적 이행점검 진행	24
1. 2013년도 추진 실적	24
2.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25
3. 2014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27
4.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28
5. 2015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29
제5절 후보과제	31

제3장 연구개발사업 관리	32
제1절 기준 자격 확대 개선	32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관련 연구전담요원 기준자격 확대	32
제2절 연구 관리 규정 개선	36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현물 부담 범위 확대	36
2.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 과제 관련 상세 정보 제출 규정 신설	37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 인력 보유 관련 규정 개선	39
4. 연구개발특구 내 경미한 입주변경에 대한 절차 및 처리기간 개선	41
제3절 기술료 등 성과확산	43
1. 공공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규정 개선	43
2. 기술료 납부수단 다양화 제도 개선	45
제4절 조세·부담금	47
1. 지역전략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신설	47
2. 중견기업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49
3. 기업연구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55
4. 기업연구소에 대한 수도권 과밀부담금 개선	56
제4장 기술창업촉진	59
제1절 창업지원	59
1. 창업의 기준과 범위 명확화	59
2.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평가 기준 개선	61
제2절 조세·부담금	65
1. TIPS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개선	65
2. 창업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담금 완화	66
3. 창업기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68
4.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인정	70
제5장 기술지주회사	73
제1절 설립	73
1.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비율 완화/폐지	73
2.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의 주식 보유율 규정 개선	74
3.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진입규제형식 일치화	76
4.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77
5.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대도시 소재 산학협력단 증과세 면제	80
제2절 운영	82

1.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자회사 인수 제한 규정 개선	82
2.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직원 겸직 관련 규제 개선	83
제6장 기술혁신	87
제1절 절차개선	87
1.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판단대상 확대	87
제2절 바이오	91
1. 생산공정이용시설 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에 관한 규제 공백 제거	91
2.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제한 규제 완화	93
제3절 자율주행	100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100
2. 운전자 중심 관련 규정 전면적인 개선 추진	105
제4절 빅데이터	108
1. 빅데이터 기술 상용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규제 완화	108
2. 개인정보 제공 제한 규정 완화	114
제5절 그 외 신산업 육성	118
1.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 금지의 원칙 완화	118
2. 개인 레저용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법 규제개선	124
제7장 자원활용과 환경규제	130
1. 탄소자원화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 재정비	130
2.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간소화	135
제8장 과학제도 정비	141
1. IR52 장영실상 심사 및 포상 운영규정 개선	141
2.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통지 규정 개선	142
3. 한국거래소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	161
제9장 전문기관효율화특위 지원을 통한 기관 규제 사항 등 발굴	166
1. 개요	166
2. 해양과학기술진흥원	166
3.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167
4. 보건산업진흥원	168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9
6. 한국연구재단	169

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70
8.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1
9. 국방기술품질원	172
10. 환경산업기술원	173
11. 산업기술진흥원	174
12. 에너지기술평가원	175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5
14. 기상산업진흥원	176
제10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8
참고문헌	180

표 목 차

<표 1-1> 주요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5
<표 1-2>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5개 국가 순위	6
<표 1-3> 국가의 제도적 지원 분야 세부항목별 5개 국가 순위	6
<표 2-1> 2016년도 규제 발굴·개선 현황표	13
<표 2-2> 2016년도 상·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14
<표 2-3> 2013년도 추진 실적 세부 표	24
<표 2-4>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세부 표	25
<표 2-5> 2014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세부 표	27
<표 2-6>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세부 표	28
<표 2-7> 2015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세부 표	29
<표 2-8> 2016년도 후보과제 현황표	31
<표 6-1>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단계 구분	101
<표 6-2>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현황	108
<표 6-3> 단계별 조치사항	110
<표 6-4> LBS 서비스 세부제공 항목	120
<표 6-5> 캐나다 교통국이 발표한 소형 드론 규제 내용	129

그림 목차

[그림 1-1] 세계 잠재성장률 전망	1
[그림 1-2]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2
[그림 1-3] 인구전망	3
[그림 1-4] 산업혁명 발전과정	4
[그림 1-5]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8
[그림 1-6]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선작업반 추진 체계 구조도	12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	44
[그림 6-1] 유전자 치료제 원리	94
[그림 6-2] 유전자 치료제 현황	94
[그림 6-3]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전망	100
[그림 6-4] 2016년 관계부처협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111
[그림 6-5] 2014년-2019년 세계 LBS 시장규모	118
[그림 6-6] 무인기체의 현행법상 구분 기준	124
[그림 6-7]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기준	125
[그림 7-1]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130
[그림 7-2] 탄소자원화 프로세스	131
[그림 8-1] 증권시장의 구조	142
[그림 8-2] 코스닥 상장 절차	144
[그림 8-3] 크리스퍼 기업 경쟁 상황	145
[그림 10-1]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규제발굴개선분포 비교	178

제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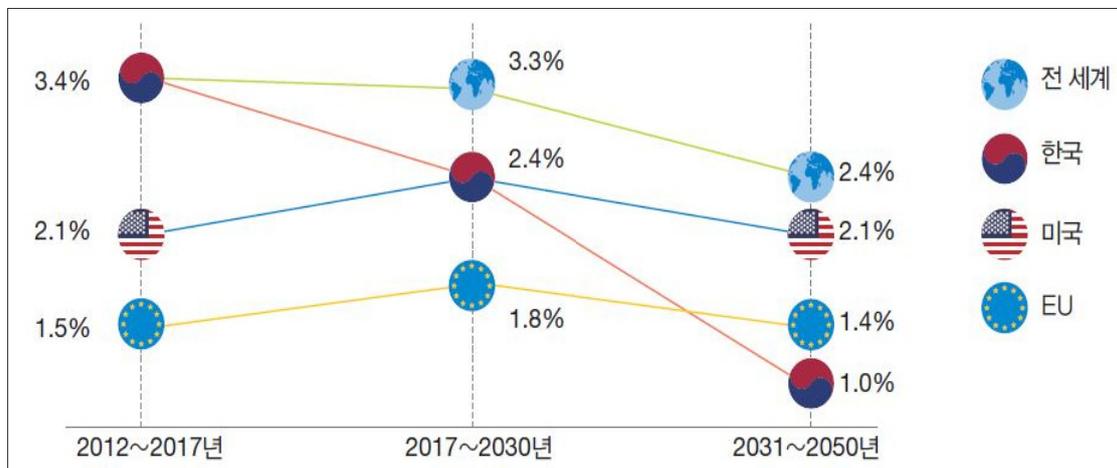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뉴노멀 시대의 도입

- 가파르던 성장곡선을 나타내던 고성장시대가 지나고 완만한 성장곡선을 꾸준히 나타내는 저성장시대가 옴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이 3% 수준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돌입

* 뉴노멀이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을 뜻하는 말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등장한 경제 현상들을 지칭

-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경제가 저성장·저금리·저물가·고실업·고부채·규제강화 등이 경제의 주된 현상이 되고 기존의 '경기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등의 경제 용어들이 뉴노멀 시대의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출처: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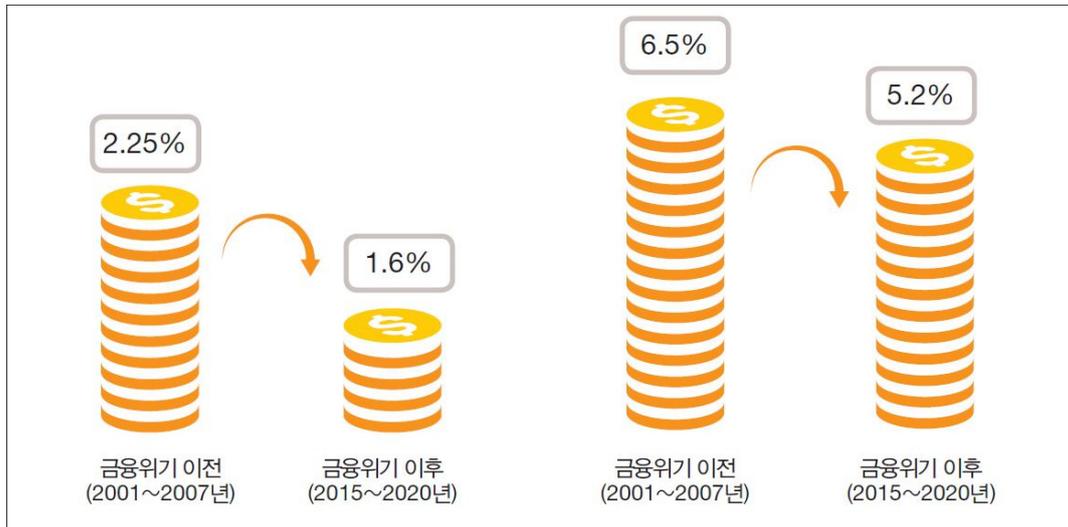
[그림 1-1] 세계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 OECD)

- 선진국의 3%대 이하의 경제성장률과 신흥국의 성장률 하락이 계속됨에 따라 IMF는 2015년~2020년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1.6%로 전망하였고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5.2%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¹⁾

1)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201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2 2016년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는 금융위기 이전의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인 2.25%와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인 6.2%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특히 세계 경제시장을 주도하던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하락함을 보이는데 2010년 10%에 달하던 중국의 경우 2015년에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지며 저성장의 장기화가 우려



출처: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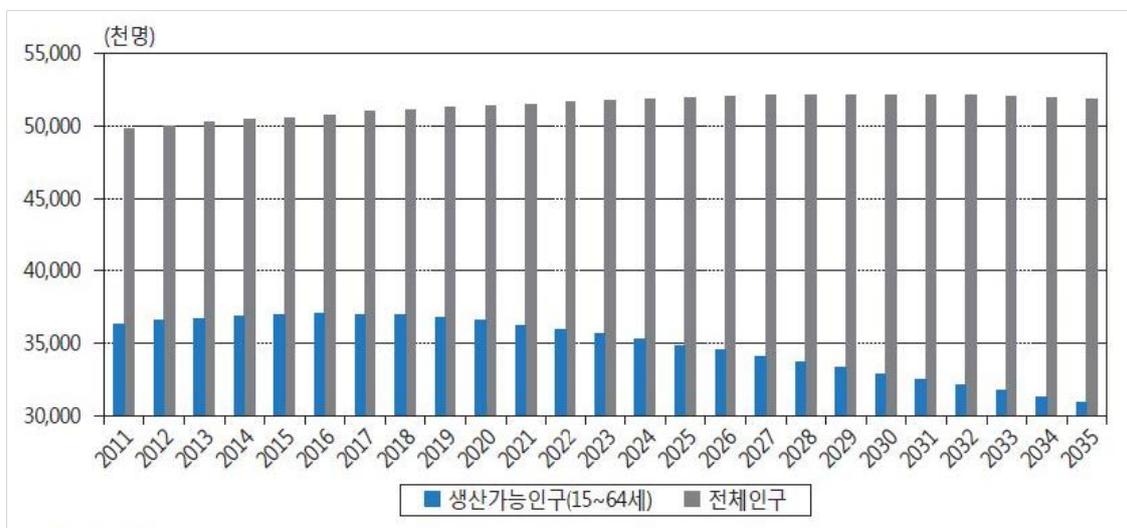
[그림 1-2] 선진국과 신흥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 IMF)

- 우리나라도 저성장의 예외가 아니며 다수의 경제관련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며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KIET, 산업경제분석, 2016)
 - 이에 저성장의 고착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
- 경제의 수치적인 저성장과 함께 봉착한 거대 사회 이슈 중 하나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있으며 이는 경제 생산 인구나 직결되는 중요한 노동요소로 이를 감안한 신산업 육성 방안이 필요
 -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들어가지만,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KIET, 산업경제분석, 2016)
- 신산업 육성이 시급한 분야로 정보통신기술부문의 기술혁신 및 규제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OECD의 성장회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개 대상 국가 대부분에서 정보통신기술부문의 투자변화로 인하여 정보통신기술부문 자본투입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 0.31%포인트 정도 성장을 견인한데 비해서 위기 이후에는 0.12%포인트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

여도가 감소

* OECD에서는 2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2007년과 이후인 2009년~2014년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생산요소별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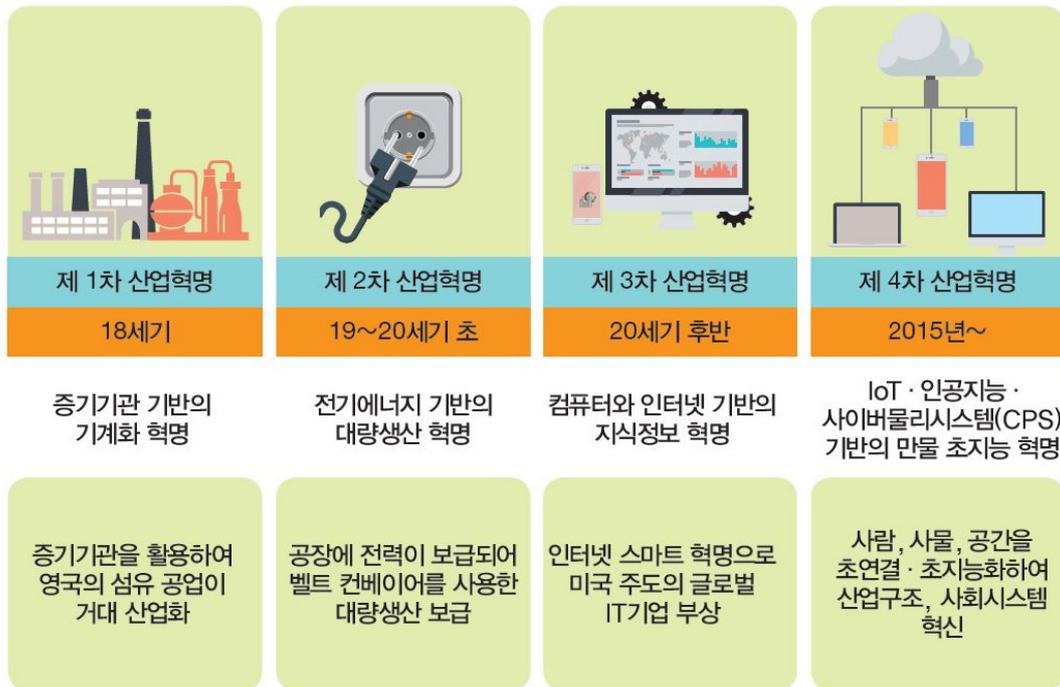
- 이는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의 인터넷과 반도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혁신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 분야에서 투자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혁신이 빠르게 전파되고 관련 시장이 성숙·포화되며 추가적인 혁신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투자에서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KIET, 산업경제분석, 2016)되며, 기존의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의 등장을 대비한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 요구



[그림 1-3] 인구전망 (자료: 통계청)

2.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저성장 뉴노멀 기조와 함께 글로벌 생산성 하락으로 인하여 新성장동력이 필요
- 이런 가운데, 주요국들은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촉발
- 4차 산업혁명의 등장
 - (정의)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기술 혁명
 - 1차는 동력, 2차는 자동화, 3차는 디지털에 의하여 산업혁명이 촉발되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속도, 범위, 영향력 등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과 차별화되고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



[그림 1-4] 산업혁명 발전과정

- 세계 주요국들의 ‘4차 산업혁명’ 준비
 - 글로벌 경제는 중요소생산성 하락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로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이와 관련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 중

〈표 1-1〉 주요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가	주요 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제조파트너십(AMP), 첨단제조업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의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 'Industry 4.0'을 발표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진화 전략 '제조업 3.0'을 발표 - IT 융합,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제조업 소프트 파워 강화 등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형 고부가 산업으로의 재편을 위해 '제조업 2025' 발표 - 30년 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 확립 목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산업부 진흥전략, 산업경쟁력 강화법 - 비교우위 산업 발굴, 신시장 창출, 인재육성 및 확보체계 개혁, 지역혁신

출처: 각국의 정부발표 자료 요약

- 산업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유 경제 및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를 이용한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단순직의 일자리는 줄어들 전망

* 각종 서비스와 재화가 모바일 네트워크 또는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즉각 제공되는 경제 시스템

-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이 제공된다면 국민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스위스 거대 금융그룹 UBS*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시스템, 사회기반시설의 적합성, 국가의 제도적 지원 등의 요소로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국가들을 평가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있어 국가별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한국은 세계 26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 1998년 6월 스위스 양대 금융 그룹인 스위스 연방은행(Union Bank of Switzerland, UBS, 1912년 설립)과 스위스 은행(Swiss Bank Corporation, SBC, 1872년 설립)의 합병으로 탄생한 스위스의 금융 그룹)

〈표 1-2〉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5개 국가 순위

단위: 순위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시스템	사회기반 시설 적합성	국가의 제도적 지원
1	스위스	1	4	1	4.0	4.25
3	미국	4	6	4	14.0	23.00
4	독일	28	17	6	9.5	18.75
6	일본	21	21	5	12.0	8.50
26	한국	83	23	19	20.0	65.25
28	중국	37	68	31	56.5	60.50

출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World Economic Forum

〈표 1-3〉 국가의 제도적 지원 분야 세부항목별 5개 국가 순위

단위: 순위

순위	국가	재산권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사법권 독립	기업 윤리
1	스위스	2	3	6	6
3	미국	22	15	28	27
4	독일	17	20	17	21
6	일본	7	6	12	9
26	한국	45	52	69	95
28	중국	51	63	67	61

출처: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World Economic Forum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시스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
 - 우리나라는 기술 수준에서 23위, 교육 시스템에서 19위로 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이 83위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국가의 제도적 지원 항목이 65.25로 중국의 60.50보다 낮은 순위
- 결론적으로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대한 4차 산업혁명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와 함께 국가의 제도적 지원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핵심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신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및 규제개혁을 통한 인프라 마련이 늦어지는 현황

3.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 확보

- 일반적으로 규제개혁 또는 규제개선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설명²⁾
 - 특히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국가경쟁력의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급증
 - 과학기술 혁신 활동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신기술의 제품화 또는 창업, 그리고 시장진입 등 사업화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
 - R&D성과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또는 국내·외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나 규정은 국가경쟁력 저하 초래
- 기업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규제정책을 기업이 당면한 애로점으로 지적
 - 대한상의회가 발표한 ‘2015년도 국내기업의 당면애로 전망’에 따르면 국내기업 305개사(대기업 93개, 중소·중견기업 21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정책 관련 애로가 기업 정책 환경 부문에서 1위를 차지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38개국 중 26위로 규제개선 효율성은 2015년 74위에서 2016년 59위로 개선된 반면, 정부규제 부담순위는 2015년 96위에서 2016년 105위로 9단계 하락(WEF, 2016)
 -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기업발전 및 혁신지원 정도는 2015년 세계 30위에서 2016년 43위로 13위 하락(IMD, 2016)

2) 2013 규제개혁백서(2014), 규제개혁위원회

8 2016년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1-5]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자료: 이투데이)

- R&D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련의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시장진입을 방해
- 따라서 산·학·연 각 과학기술 혁신 주체의 기술사업화·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
- 효과적인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규제발굴 시스템 및 분석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
-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시적인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각 분야의 실무자·전문가로부터 개선의 타당성·시급성을 검토할 필요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범부처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 내 규제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상황
-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 관련 규제 개선 진행 필요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35조 제1항)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과학기술기본법 제35조 제2항)

□ 그간 과학기술 분야 규제 정책의 문제점

○ 과학기술 규제 관련 범부처 종합조정 부족

- 각 부처별 과학기술 분야 규제정책 추진으로 엇박자 발생
 - ※ (예) 25개 부처가 각자 인증·표준·기술기준 운영(법정인증 38개, 법정임의인증 71개) → 기업 인증 비용 연간 4조원, 중소기업 한곳 당 14.9개 인증보유('10)
- 임시방편적 소폭 개선에 그쳐 현장 체감도는 미흡

○ 그간 연구개발 단계 중심의 규제완화 추진

- 연구비 정산 기준 정비, 한국형 그랜트 제도 도입(평가절차 간소화) 등 연구몰입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에 집중
-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등 과학기술혁신활동 전 분야를 포괄하는 규제 개선대책은 부족
 - ※ 기술이전·사업화 단계를 위한 과학기술 규제 대책은 2차례 수립('05, '09)

○ 2014년도 최초로 과학기술혁신 전 주기 관점에서 규제개선을 추진

- 다양한 통로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부족
 - ※ 중앙 정부 위주로 전문가 인터뷰 등 오프라인 수단을 통해 규제과제 발굴
-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 미흡
- 법령(법률, 대통령령) 위주 규제개선으로 현장 체감도 부족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성

- 덩어리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하위규정(고시, 훈령, 지침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
- 신성장동력 활성화에 필요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규제발굴·선제 대응 체계 마련
- 규제개선의 국민체감도 제고
 - 규제개선 여부 및 개선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숨어있는 규제발굴 후 타부처 사전 협의 추진
- 범부처 과학기술규제 종합조정 및 연계 강화 필요

제2절 연구 목표 및 추진 방향

1. 연구 목표

-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규제발굴
 -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인 과학기술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구축 및 운영지원
 - 구축된 규제발굴 시스템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규제 개선과제 발굴
 - 실생활 및 실제 연구 활동에서 규제를 발굴하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모니터링단 위촉·운영을 통하여 상시적 현장 소통창구를 개설
 -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연구개발·바이오·신기술·빅데이터/핀테크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발굴에 초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규제개혁센터 규제발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규제개혁센터 자체 문헌조사·기사열람·논문분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 규제발굴과 상세한 법률규제 개선안 제시
 - 규제발굴 현장 전문가 및 법률 자문단 운영
 - 상시적인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개선 방안(안) 마련
 - 발굴된 규제개선 후보과제는 법령검토 (규제개선작업반 및 법률지원단) → 부처협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
- 전문기관 효율화 관련 총괄·조정 지원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지원

2.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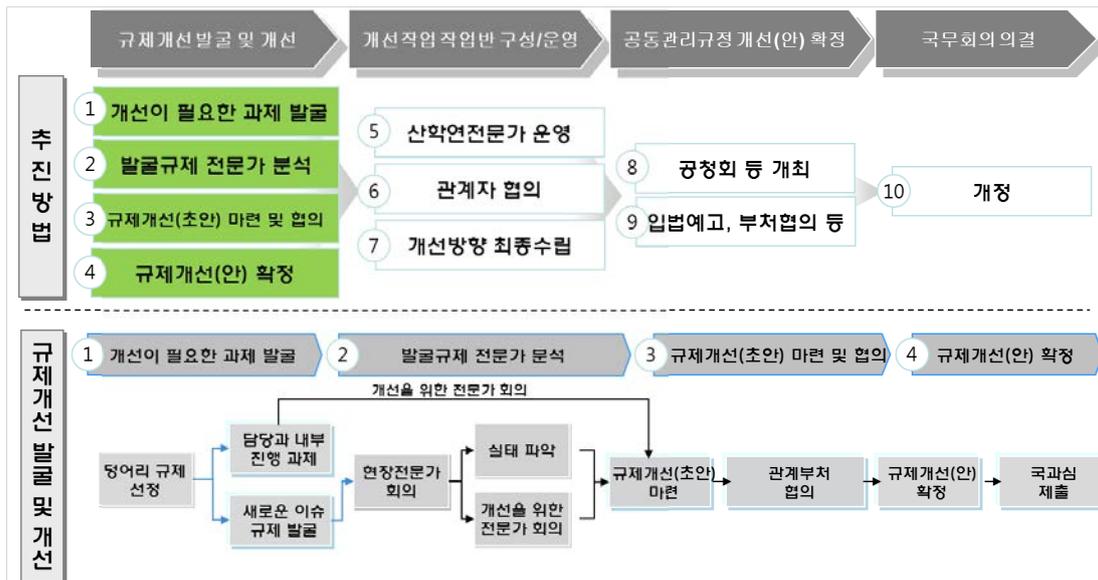
-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규제발굴 및 범부처 대책 마련
 - 범부처 과학기술규제 종합조정 및 연계 강화
 - 총체적이고 중장기적 규제개선 모니터링
 -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체계 마련
- 전문기관 재편 로드맵(안) 수립 前 효율적 재편(안)의 기본방향 및 기준(안)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논의하여 공정한 기준 수립 및 이행력 확보

제3절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인 과학기술 규제개선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구축 및 운영

□ 규제개선작업반 구축 및 운영

- 현장 전문가 및 기업인 등을 초빙하여 작업반을 구성하여 분야 내 규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구축된 규제발굴 체계 등을 활용한 과학기술규제 개선과제 발굴
- 온·오프라인 상시적 과제 발굴 체계 활용 동시에 법률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및 기사 분석, 온라인 규제개선 창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 규제 발굴



[그림 1-6]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선작업반 추진 체계 구조도

제2장 2016년도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추진과제

제1절 개요

-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대상과제 발굴 추진 작업을 진행하여 후보 발굴 규제 선정
 - '16년 상반기·하반기에 걸쳐 총 50개 후보 과제 발굴
 - 과학기술 국민 모니터링단 등 상시적 규제개선 시스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부 규제발굴 시스템, 규제개선작업반 등을 통해 발굴
- 총 50개의 과제 중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분석·검토하여 총 12개의 규제에 대한 개선안 제시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6년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안)」 심의·의결('16.12.9)
- 12건 과제 확정

〈표 2-1〉 2016년도 규제 발굴·개선 현황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기술창업·사업화 촉진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
10건	1건	1건

※ 제외(38건) : ① 타당성 등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으로 추후 재검토 예정

〈표 2-2〉 2016년도 상·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추진과제		관계부처
①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10건)		
기획·과제선정	① R&D사업 선정단계 시 제출서식 간소화	미래부
연구비 등 관리	② R&D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미래부, 산업부 등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유효기간 폐지	미래부
	④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집행비율 완화	미래부
	⑤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폐지	미래부
	⑥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비 부담방식 개선	미래부
	⑦ 창업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미래부
	⑧ 연구행정인력의 인건비 집행기준 개선	미래부
	성과 관리	⑨ 국가연구개발 유형적 성과 소유권 명확화
⑩ 출연연 주요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비 개선		미래부
② 기술창업·사업화 촉진 및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강화(2건)		
기술 사업화 촉진	⑪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보유율 규정 완화	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⑫ 천연화장품 정의·기준 및 규정 공백 제거	식약처

제2절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1. R&D사업 선정단계 시 제출서식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선정·평가 시 제출 서식 과다
 - 연구자는 연구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불필요한 항목과 유사한 항목 등 많은 내용을 과도한 분량으로 작성하여 제출 필요
 - ※ 불필요한 항목 : 수상경력, 국내외 학(협)회 활동, 기초분야의 경제적 기대효과, 과제별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작성,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등
 - ※ 내용적으로 유사중복되는 항목 : 연구개발 개요와 연구개발의 중요성, 연구개발의 창의성·혁신성,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추진체계
- (개선방안(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연구와 관련 없는 항목 작성·제출 의무 삭제*(미래부) ('17년 3월)
 - 과제 선정 시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제출을 생략하고 협약 시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조치계획(규정)을 첨부
 - * 공동관리규정에서 삭제 :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제6조제4항 제9호, 제7조제3항), 최종결과보고서에 국내외 기술개발현황,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NTIS에 등록된 연구 시설·장비현황(제15조제2항 각호)
- (기대효과) 연구현장에 대한 불필요한 정부간섭과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가R&D 성과 제고

2. R&D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공동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관리기준을 일부 부처에서 상이하게 적용
 -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규정으로 연구자가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여 반납하거나,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받는 경우 발생

16 2016년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개선방안(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미래부),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추진(‘17년 3월)

◦ 다수부처의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기준 통일, 필요시 연구주체별 구분

※ ‘정부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 (‘16.10.31, 국과심 운영위)에 따라 추진

〈예시〉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과제 참여 시 인건비 지급 여부

(기 준)	(통일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 미래부(NRF): 가능, 산업부: 불가능 ▸ (개인사업자) 산업부: 가능, 미래부(NRF):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전부처가 표준매뉴얼을 이행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공동관리규정에 표준매뉴얼 의무이행 조문 신설

□ (기대효과) 연구비 집행기준 표준화·단순화를 통해 연구현장의 혼란 해소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유효기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매년 운영현황 점검(서면, 현장)

◦ 2년마다 다시 지정 신청·심사를 받아야 됨에 따라 행정부담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지정유효기간(2년)을 폐지하여,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운영 필요

□ (개선방안(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미래부)(‘17년 3월)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유효기간(2년) 폐지

※ 제12조의3제2항 개정

- (기대효과)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감소 및 안정적으로 통합관리제 운영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집행비율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통해 과제가 종료되더라도 학생인건비 지급은 가능하나, 집행비율* 관리로 인해 충분한 인건비 확보가 어려움이 발생

* 현행 기관의 평균집행비율이 80% 미만일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지정취소

- 소속 학생연구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건비 확보를 해 주어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관별 집행비율 완화 필요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학위과정 동안 등록금 지원 등을 전제로 대학원생 모집 중

- (개선방안(안))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미래부) ('17년 3월)

- 과제 종료 후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평균집행 비율 기준 완화(80% → 60%)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10조(지정취소) 개정

- 기관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학생연구원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연구책임자별 통합관리를 연구기관별 통합관리로 개선 검토

- (기대효과) 과제 종료 후에도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5.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시 학생인건비 예산을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필요

* 당초 계획 대비 200만원을 초과하여 5%이상 증·감액 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정산 및 반납이 면제됨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 전문기관에서 예산액 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형식적인 승인절차로 변질되어 행정부담만 가중

- (개선방안(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미래부) ('17년 3월)
 - 과제별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에 대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폐지하고, 연구기관 내부절차를 통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 ※ 제12조의2제3항제5호 개정
- (기대효과) 연구비 집행 및 관리 행정부담 완화

6.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비 부담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외국기업 등의 경우 국내법상의 대, 중견,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
 - 또한, 연구내용, 역할 등에 따라 연구비 부담이 결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의4
-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구개발비 부담방식을 개선할 필요
 - * 해당 국가의 제도와 법률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협약이 존재
- (개선방안(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미래부) ('17년 3월)
 - 국제공동연구는 국가간 연구수행주체간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점을 감안
 -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
 - ※ 제12조제3항 개정
- (기대효과) 국제공동연구 추진의 유연성 제고 및 활성화

7. 창업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창업할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 미비

- 일부 연구현장에서 창업한 학생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 학생의 창업활동 기피
 -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 (개선방안(안))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추진(미래부) ('17년 6월)

- 창업한 학생연구원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명확화
 - ※ (개정(안))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 인건비 계상 가능

□ (기대효과) 학생인건비 계상범위 확대를 통해 대학(원)생의 창업 활성화

8. 연구행정인력의 인건비 집행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연구행정인력의 인건비를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지원 미비

- * (간접비 중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자가 직접 연구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부담 증가 및 성과창출 저해

※ 연구시간의 15%를 연구행정에 소요('15.10월 미래부 설문조사)

□ (개선방안(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방안 검토(미래부)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비 정산 등 연구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연구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인건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

※ 정부R&D 혁신방안('16.5,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

□ (기대효과) 연구자의 연구행정부담을 경감하여 연구몰입 환경 조성

9. 국가연구개발 유형적 성과 소유권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성과에 대한 소유 기준 규정 문구가 애매하여 당사자간 분쟁 발생 소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임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거나, ‘주관연구기관의 소유’ 여부를 ‘협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석되기도 하는 상황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개선방안(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미래부)

- 국가연구개발 유형적 성과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임을 명확히 명시

-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 방안 검토

- (기대효과) 국가연구개발 유형적 성과 소유 혼란 방지

10. 출연연 주요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출연연의 경우 특히 출원·등록비 등 지식재산권 관리비는 해당 사업에 국한하여 집행 가능한 상황

- 정부수탁사업*과 달리 연구회 규정상 해당사업 외에는 지재권 비용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용 집행에 애로 발생

- * 정부수탁사업의 경우 간접비에서 지재권 출원·등록·유지 경비를 사용하도록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개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관리규정」 개정(미래부) ('17년 6월)

- 공동관리규정에 준하여 지식재산권 관리비는 기관 공통으로 흡수하여 체계적인 관리 하에 활용토록 규정 개정

- (기대효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시 비용집행이 수월해지며, 특히 해외출원 시 비용부족 문제가 해결되어 우수한 성과 창출 가능성 확대

제3절 기술창업·사업화 촉진 및 혁신인프라 강화

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보유율 규정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기술지주회사*는 출자회사 설립 시 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 필요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 2년 동안 보유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학연법) : 설립 시부터 계속

○ 자회사가 성장할수록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보유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회사를 지원하는데 제약이 되는 상황

※ 자회사 성장 시, 지분 매입을 위한 자본 수요가 증가하여 부담이 증가(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사업내용 지배보다는 사업 지원이 주목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③ 생략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부)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개정 검토

○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 검토

□ (기대효과)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사업화 활성화 기반 마련

2. 천연화장품 정의·기준 및 규정 공백 제거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화학성분에 의한 부작용/피해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천연 화장품 수요(2조 7,772억원 규모, '14년 기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 및 기준 마련 필요
 - 천연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허위 광고가 난무해 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시장 축소 우려도 존재
 - ※ 현재 화장품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기능성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만 정의
- (개선방안(안)) 「화장품법」 개정(식약처)
 - 천연화장품의 “정의” 및 “기준” 마련 진행 중
 - ※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 16.7.) (' 16.9.21. ~ 11.1. 「화장품법」 입법예고)
 -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 천연화장품의 구체적 기준 마련
- (기대효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관련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제4절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실적 이행점검 진행

1. 2013년도 추진 실적

□ (실적) 총 18개 과제 모두 완료

〈표 2-3〉 2013년도 추진 실적 세부 표

추진과제		주관 부처·부서	현황
①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4개)			
①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②	네거티브 방식의 연구비 관리기준 마련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③	연구비 집행 간소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④	유사 중복 행정절차 통·폐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② 신산업·신시장 창출 (5개)			
신산업 진입규제 해소			
⑤	모바일 의료용 앱 규제정비 * 「의료기기의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완료
⑥	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기준정비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완료
⑦	방위산업 분야 국산SW 역차별 제도개선	방사청 (회계제도담당관)	완료
⑧	IT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	완료
⑨	개인정보보호체계 정비	미래부 (과학기술전략과)	완료
③ 기술창업 촉진 (3개)			
⑩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제도 개선 * 연구개발특구법	미래부 (지역연구진흥과)	완료
⑪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충기청 (기술개발과)	완료
⑫	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의 R&D참여제한 완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	완료
④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 (6개)			
안전규제 강화			

추진과제		주관 부처·부서	현황
⑬	나노물질 인증 및 평가체계 구축	산업부 (바이오나노과)	완료
⑭	시험성적서 원본제출 의무화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완료
출연(연) 규제개선			
⑮	출연(연) 정원관리 합리화	미래부 (연구기관지원팀)	완료
기업 기술인력 규제개선			
⑯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전공제한 완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완료
법령 적용·해석			
⑰	연구실 안전 관련 현장 이중점검 해소 *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법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	완료
⑱	출연(연) 기본사업비 집행기준 마련 * 연구회 「주요사업관리기준」	미래부 (연구기관지원팀)	완료

2.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 (실적) 총 21개 과제 중 15개 과제 완료, 5개 추진 중, 2개 추진보류

〈표 2-4〉 201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세부 표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①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6개)			
①	일반개인의 연구개발 수행자격 허용	미래부 (연구제도과)	추진보류
②	기업의 연구비 처리 등 행정부담 완화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미래부 (연구제도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완료
③	중소기업의 간접비 비율 확대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완료
④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⑤	국제공동R&D사업 협약체결 기간 연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미래부 (연구제도과)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완료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⑥	우수과제의 집행잔액 이월사용 허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완료
② 신산업·신시장 창출 (10개)			
⑦	스마트카의 일반도로 시험운행 허용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완료
⑧	전기차 주행거리 시험방법 개선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 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산업부 (에너지관리과)	추진중
⑨	자동차 사이드 미러기준 정비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추진중
⑩	전기자전거 분류 기준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자부 (주민생활환경과)	추진중
⑪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규정 정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완료
⑫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 생명윤리법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완료
⑬	연구용 난자 허용범위 확대 * 생명윤리법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추진보류
⑭	연구자 임상시험 자료 인정범위 확대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완료
⑮	조건부 인허가 허용범위 확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완료
⑯	산지 경사도 기준 개선	문체부 (관광개발기획과)	완료
③ 기술창업 촉진 (2개)			
⑰	창업기업의 연구과제 신청제한 완화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 중기청 (기술개발과)	완료
⑱	벤처확인제도 개선	중기청 (벤처정책과)	완료
④ 과학기술혁신인프라 강화 (3개)			
⑲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 확대 * 근로기준법	노동부 (임금근로시간팀)	추진중
⑳	해외생산 녹색기술제품 확인 제도 정비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	완료
㉑	신생기업의 공공사업 참여제한 완화	기재부 (계약제도과)	완료

3. 2014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 (실적) 총 10개 과제 중 9개 과제 완료

〈표 2-5〉 2014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세부 표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① 기술이전.사업화 (5개)			
지재권 거래 활성화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참여기업 외 실시 요건 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② 지식재산권 양도 가능 범위 확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융합연구			
	③ 기업의 원천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 조건 완화(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자격완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	미래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완료
	④ 비영리법인의 원천연구개발사업 참여 자격 조건에 인문계도 포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령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	완료
대학 기술지주회사			
	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를 투자조합 "조성"에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로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완료
② 신산업.신시장 창출 (4개)			
첨단자동차			
	⑥ 시험운행용 자동차의 자율조향장치 설치 허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완료
	⑦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제한 완화 검토 * 「자동차 관리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완료
빅데이터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업무의 제3자 위탁 시 동의조항 개선 *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완료
	⑨ 불명확한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이전에 대한 법령 정비 *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완료
③ 기존산업 활성화 (1개)			
여성 창업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⑩ 여성가장 창업자금제도 개선 * 여성가장창업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요강)	중기청 (공공구매관로과)	완료

4.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 (실적) 총 12개 과제 중 8개 과제 완료, 4개 추진보류

〈표 2-6〉 2015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세부 표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① 연구관리 (7개)		
해약		
① 과제해약시 참여연구진 의견청취 절차 마련	미래부 (연구제도과)	추진중
제재조치		
②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③ 참여제한 기간 산정 방식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추진중
기술료 등 성과확산		
④ 기술료 미납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⑤ 기술료 의미 혼용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연구개발 성과활용		
⑥ 기술실시 우선대상기업 범위 확대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완료
⑦ 위원회 구성시 성별 고려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부 (연구제도과)	완료
② 기술혁신 (2개)		
절차개선		
⑧ 연구용 기자재 관세감면 품목대상 확정 기간 조정	기재부 (관세제도과)	추진중
자동차 산업		
⑨ 초소형자동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추진중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③ 조달구매 (1개)			
적용 방법			
	⑩ 장비 구매 입찰 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이용 확대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④ 신산업 (2개)			
적용 방법			
	⑪ 소형무인기(초경량비행장치) 분류기준 재정립 검토	국토부 (운항정책과)	완료
	⑫ 무인기 비행시험 전용공역 지정(무인항공기) 검토	국토부 (항공관제과) 국방부	완료

5. 2015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 (실적) 총 21개 과제 중 12개 과제 완료, 9개 추진중

〈표 2-7〉 2015년도 하반기 추진 실적 세부 표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① 제재규정 현실화 및 구체화 (3건)			
	① 용도외 사용 인건비 환수 기준 개선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추진중
	② 복수의 연구개발과제 동시 제재 처리기준 마련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추진중
	③ 개인명의 출원·등록시 제재 강화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② 행·재정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 (4건)			
	④ 연구개발 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범위 확대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추진중
	⑤ 연구비 잔액 미회수 특례 적용 확대	미래부 (연구개발정책과)	완료
	⑥ 학생인건비 변경 승인 의무 완화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⑦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의무 완화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③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3건)			
	⑧ 과제평가 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분야 추가	미래부	완료

추진과제		주관 부처	실적
		(연구개발정책과)	
	⑨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실시유형 개선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	추진중
	⑩ 연구개발 시제품, 연구노트 소유제도 개선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추진중
4 모호한 규정 명확화 (8건)			
	⑪ 기술료 미납 시 사업비 추가 환수 폐지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⑫ 연구개발서비스업 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명확화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	완료
	⑬ 연구개발서비스업 간접비 비율 계상 명확화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과)	완료
	⑭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가.감점 기준일 명확화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추진중
	⑮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감점 부여항목 개정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추진중
	⑯ 연구개발과제 기획위원의 선정평가 참여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완료
	⑰ 연구개발비와 정부출연금 구분 명확화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⑱ 기업의 분류기준 재정비	미래부 (연구제도혁신과)	완료
5 기 타 (3건)			
	⑲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요 건 개선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완료
	⑳ 출연연구원 시간제 초빙연구원 자격기준 완화	미래부 (연구기관지원팀)	추진중
	㉑ 전기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준 제정 신청요건 완화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추진중

제5절 후보과제

□ 타당성 등의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 등으로 추후 재검토 예정

- 38건의 과제는 최종 제외되었으나, 부처협의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문헌 검토, 현장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2017년도 과학기술 규제개선 안건 논의 시, 재검토 예정

〈표 2-8〉 2016년도 후보과제 현황표

구분	미래부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교육부	중기청	행자부	복지부	경찰청	환경부	금융위	소계
	7	4	5	5	5	3	3	1	2	1	2	38

□ 후보과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료 공유 및 심도있는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제3장부터 제8장까지 내용을 정리

-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

제3장 연구개발사업 관리

제1절 기준 자격 확대 개선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관련 연구전담요원 기준자격 확대

□ 규제법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현황

-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는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사업연도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의 매출액으로, 2개인 경우에는 2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7명 이상

5.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③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p>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p> <p>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p> <p>6.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과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한다)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p> <p>3.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4.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p> <p>5.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p> <p>⑤ 제3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5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p>
--

- 현재 예외적으로 산업디자인분야와 지식기반서비스분야만 연구전담요원이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경력이 2년 이상 있으면 가능”하거나 “관련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이면 가능
 -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기준표 상의 기준경비율코드가 '72'로 시작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
 -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 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
-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다음에 해당

동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 “자연계 분야” 학사소지자 중 3년 이상 경력의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해야 참여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학력에 대한 완화 조치는 현재 전무(全無)

□ 문제점

- 특히, 현장에서는 인문계 졸업생임에도 융·복합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들을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특성상 연구인력 및 기술 인력의 이직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등의 경력자와 전공자를 결원보충 및 신규 채용 어려운 상황
- 인문계열 졸업자중 연구개발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문계열 출신 연구경력 인력이 연구보조원으로만 인정되어 인문계열 연구경력인력의 규제 개선이 필요

□ 개선방안

- 학문간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시대 걸맞은 고부가가치 융합연구 활성화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연계 분야”완화 조치 확대

제2절 연구 관리 규정 개선

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현물 부담 범위 확대

□ 규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은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제12조 제3항, 별표 1의4에서 규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 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생략)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u>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u> (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u>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u>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p>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p>
---	--	---

-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등 상기 별표 1의4에서 규정한 비용만 연구개발비 현물 부담이 허용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3조 제3항 및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제5조도 이와 같이 규정

□ 문제점

- 콘텐츠융합 관련 국가R&D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제도적으로 무형자산의 현물계상 체계의 부재로 무형자산의 현물계상이 불가능
- 이에 따라 콘텐츠융합 관련 국가R&D 사업 협약 시, 현물 투입에 대한 애로 발생
-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및 현물계상 체계에 대한 기업 수요 증가로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 구축 필요

□ 개선방안

-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으로 추가하여 『공동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 수정 필요
- (예시) 초기에는 연구개발비의 10%에 한해서 현물 부담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시범 운영

2.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 과제 관련 상세 정보 제출 규정 신설

□ 규제 법률 : 공동관리규정 제31조

□ 현황

- 현재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에 관한 공동관리규정 제31조에는 부정행위 검증 시 관련 상세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공동관리규정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문제점

-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연구 관련 정보 및 연구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과제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유 파악 등이 어려움

□ 개선방안

- (1안) 각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
- (2안)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의무화를 통하여 수사 기관을 통한 자료 및 정보 수색 및 수집이 가능토록 규정 신설 필요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 인력 보유 관련 규정 개선

- 규제 법률 : 공동관리규정 제17조 제4항

□ 현황

- 공동관리규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일부 기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외부 인력만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공동관리규정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생략)
2.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3. (생략)
4. (생략)

□ 문제점

- 이런 경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도 어긋남
- 또한 연구비를 기관(기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으로 인한 연구비 부실사용 문제 해결이 가능함

□ 개선방안

- 연구개발사업만 전문적으로 수주하는 기관(기업)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를 차단하고 규정을 보완하여 연구 인력의 아웃소싱이 아닌 직접 고용 증대 효과

현행법	개선(안) 예시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④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생략) 2.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연구윤리 수준 3. (생략) 4. (생략)	세부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생략) 2. <u>연구인력의 보유 형태 여부 및 우수성, 연구윤리 수준</u> 3. (생략) 4. (생략)
---	--

4. 연구개발특구 내 경미한 입주변경에 대한 절차 및 처리기간 개선

□ 규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현황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업체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3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과 동일하게 입주변경을 진행 필요

특구법 제37조(입주승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승인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동법 시행령 제33조(입주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

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주승인을 받을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문제점

-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이에 이 업무를 위탁 진행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입주승인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변경과 동일하게 행정소요일을 30일로 판단하여 그 결정을 내리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연구환경을 빠르게 대처할 수 없음

□ 개선방안

- (1안) 특구재단 내 규정 개정으로 입주기관 심의회를 거치는 중요사항이 아닌 경우 처리 기간 단축하고, 최소 업무 승인 기간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지체기간을 단축*
* (단축 계획) 기존 30일 → 20일 (법령개선사항이 아닌 특구재단 내 내부 규정)
- (2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개정 또는 제37조의2를 신설하여 입주 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효과) 빠른 변경승인으로 인한 입주 연구소의 신기술 대응 강화 및 업무상 지체를 최소화하여 기술사업화에 진흥 기여

제3절 기술료 등 성과확산

1. 공공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규정 개선

□ 규제 법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 현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촉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은 통상(通常) 실시 원칙하에 협약 등에 따른 예외적 전용(全用) 실시 인정

기촉법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국가등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제9조제3항 각 호의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협약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③ 국가등은 공공연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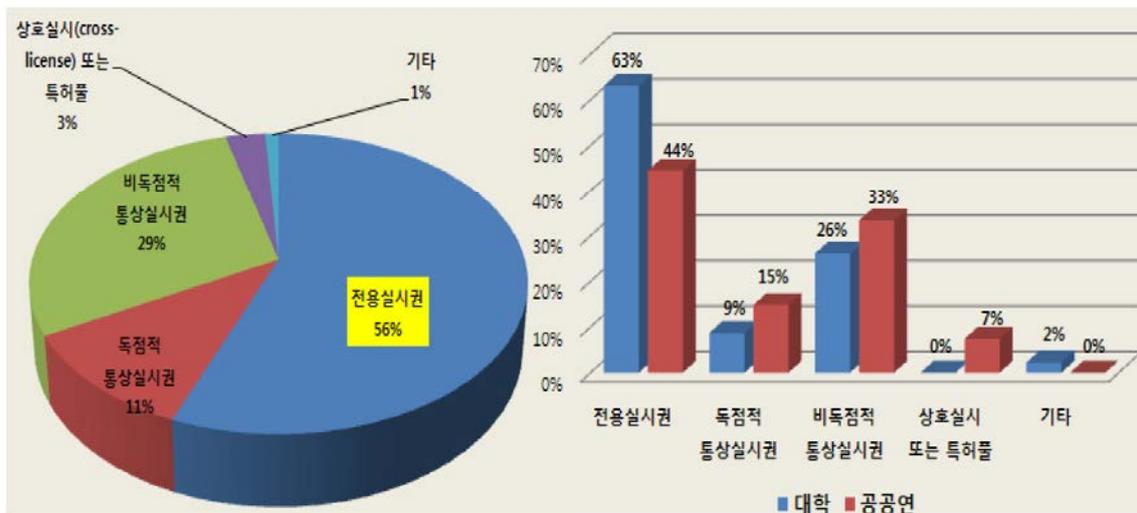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법 제24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문제점

- 실무에서는 기술이전 촉진법상 전용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실시를 정한 경우나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또는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독점실시 형태(67% : 전용 56%+독점11%)로 활용



출처: KISTEP 이슈페이퍼, 2013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

- 기업들은 기술의 전유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동일기술을 도입한 경쟁업체의 등장을 우려해 기술 사업화 주저
-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특허침해소송 관련 訴權과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실시권 등록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 상대적 권리에 불과하며 실시권의 중복설정 유무에도 차이
- 협약 시 전용 실시 조항 등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추후 후속 기술사업화에 애로

□ 개선방안

- (1안)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 따라 정함이 없는 경우 통상(通常) 실시 원칙
 ↳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 따라 정함이 없는 경우 전용(專用) 실시 원칙
- (2안)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을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공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활용 시 성과소유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성과활용의 효율성 제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가치 증진 및 전용실시에 따른 경영상 안정성 확보로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2. 기술료 납부수단 다양화 제도 개선

□ 규제 법률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고시)

□ 현황

- 최근 기술료를 주식으로 납부·징수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
- 주식의 경우 가치평가액 변동이 심하며, 비상장기업 주식의 경우 기업 부도 등의 사유 발생 시 가치소멸에 따른 문제 상존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을 통한 기술료 납부 수단 완화를 위한 방안 필요

□ 문제점

- 납부수단을 제외하는 규정을 완화
- 기술료로 납부(징수)하는 주식의 객관적 가치평가방법을 구체화를 통한 기술료 납부 방법 다양화
- 공동관리규정 및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일치화도 급선무

□ 개선방안

- (1안)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수단)</p> <p>①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정액기술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도약속어음 2.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3. 공증약속어음 4. 은행지급보증서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6.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p>- 납부수단을 제외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기술료를 납부하는 주식의 객관적 가치평가방법을 구체화</p>

- (2안) 공동관리규정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22조(기술료의 징수) ⑧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 <u>기타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u>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제4절 조세·부담금

1. 지역전략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신설

□ 규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조 제1항

□ 현황

-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규제프리존이 지정 및 운영될 곳에 위치한 창업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사업을 이행하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33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 이미 명시되어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 문제점

-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설 사업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은 국내 시장기반이 미약하여 신기술개발로 인한 매출 증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생략

나. 생략

4. 연구·인력개발비 중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 종사기업 또는 해당지역(규제프리존)에 공장/연구소가 소재한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지역전략산업 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0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 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하여 추가적인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의 법률규정을 두어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논란의 발생을 예방

□ 참고

- 20대 국회에 발의된「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므로 해당 법률 제정 이후에 중장기 개선사항으로 가능

2. 중견기업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 규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현황

-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R&D 세액 공제 대상에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을 신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8%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

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 (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중견기업의 범위가 다르게 정의되어 기업의 혼란 초래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

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⑥ 제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

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 ⑦ 제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⑧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 ⑨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⑩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⑪ 제10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적합할 것
-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5. 「저작권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기업화사업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법 제11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4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3항 및 제22조의4제3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 다르게 적용

◦ 중견기업의 범위 통일 필요

□ 개선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에 준하여 범위 변경

- (현행)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개정안 예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3. 기업연구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규제 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현황

-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시설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주거용 건물 및 특정연구기관 연구용 시설물 등

□ 문제점

-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과세 대상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연구소가 포함되어 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위축 우려가 있음

- 기업의 신기술·신산업 연구를 위한 기업연구소 설립의 활성화 필요함

□ 개선방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시설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연구소 포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p>제17조(부담금의 면제)</p> <p>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주차장 및 차고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3. 「정당법」에 따라 설립</p>	<p>제17조(부담금의 면제)</p> <p>①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주차장 및 차고2.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3. 「정당법」에 따라 설립</p>

<p>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 중 략 ~</p> <p>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p>	<p>된 정당의 소유인 시설물 ~ 중 략 ~</p> <p>19.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p> <p>20. (신설) 기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시설물</p>
---	--

4. 기업연구소에 대한 수도권 과밀부담금 개선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

□ 현황

-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내 대형 건물 건축 시 과밀부담금을 부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가목의 1)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구집중유발시설물로 분류되어 과밀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

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 문제점

- 기업연구소 신축 및 증축 시 건축비의 약 10%의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며,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과밀부담금 감면 비대상
- 서울특별시 내 대형 연구센터 설립 시 기업 부담을 경감 필요
- 기업연구소 설립 및 신축 관련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 제한 제도의 중복 적용에 따른 기업 수도권 연구개발 활성화 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과학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 7. (생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별 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나. 판매용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다.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라. 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에 대해서 과밀억제권역 내 설치하는 대기업·중견기업 연구소의 경우, 25%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개선방안

- 수도권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제외

제4장 기술창업촉진

제1절 창업지원

1. 창업의 기준과 범위 명확화

□ 규제 법률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실무지침 “창업 질의응답 사례집”상 “창업의 범위”

□ 현황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1, 2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

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 실무지침 “창업 질의응답 사례집”상 “창업의 범위”

다. 폐업 후 사업재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 1)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2)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문제점

- 창업지원법과 시행령 상에서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범위와 기준에 대한 해석을 하는 법률적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창업지원의 실무적인 내용은 창업 질의응답 사례집상의 내용에 따라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창업지원법 시행령 1항 3호의 폐업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폐업을 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창업이 아니라 는 취지임에도, 사업실패 이후 사업 재기를 위한 재창업의 경우까지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재기를 위한 재창업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이 필요

2.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평가 기준 개선

□ 규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4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5조

□ 현황

○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or)

-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 저렴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가장 큰 장점임
- 현재 대학이 운영하는 센터가 가장 많으며(전체의 약 86% 이상) 그 외에도 지자체나 공공기관, 재단 또는 협회에서 센터를 운영하기도 함

○ 1998년부터 현재까지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초기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창업지원 정책 및 인프라로 성장하였으나, 2008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창업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창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창업진흥 정책수단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근본적 혁신이나 체질개선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평가

-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전년도 운영 실적과 성과를 평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다른 평가 기준 및 방식으로 진행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

할 때

5.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5조(보육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① 청장은 규칙 제17조 제2호에 따라 **매년 초 보육센터의 직전사업년도 운영실적을 별표 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규칙 제17조 제2호에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때를 말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센터장 및 매니저의 장기근무체계 및 실적
2. 장애인기업 입주여부
3. 부실운영 등 제34조제1항에 따른 처분 여부
4.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 점검·평가 결과
5. 기타 청장이 가·감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43조제4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축·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을 보육실 총면적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임대한 실적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에 3회 연속 미치지 못한 경우

【별표 4】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인프라 (40)	인력(27)	센터장의 근무실적 및 전문성(7)	센터장 전담수행 여부	3
			센터장 장기근무 실적	4
		매니저 확보 및 전문성(20)	매니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수	6
			매니저 장기근무 실적	8
	자금(5)	운영자금 확보(5)	운영자금 확보 실적	6
	시설(8)	시설 확보(8)	보육실 면적	4
			보육실 수	4
운영 (60)	창업보육 인프라	기관장의 관심 및 의지(2)	창업사업 직접 참여 횟수	2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요소	배점
개선 의지 (23)		센터장의 관심 및 적극성(2)	워크샵 및 역량강화 교육 참석	2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3)	매니저 교육 실적	3
		매니저의 처우개선(10)	매니저 인건비	6
			매니저 성과 인센티브 지급여부	4
창업보육료 사용률(6)	창업보육료의 창업보육사업 사용비율	6		
창업보육 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 실적 (23)		센터 운영체계화 노력(2)	입주·연장·졸업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시 외부전문가 구성 비율	2
		시설 운영(7)	보육실 입주율	4
			보육실 회전율	3
		입주기업 지원(14)	사업화 지원 실적	10
교육 지원 실적	4			
입주·졸업 기업 지원 성과 (14)	입주기업 성과(12)	계속 입주기업 매출 증가율	2	
		계속 입주기업 매출 증가액	2	
		계속 입주기업 고용 증가율	3	
		인증·지재권 발생 실적	2	
		투·융자 유치 성과	3	
	졸업기업 성과(2)	졸업기업 매출	1	
졸업기업 고용		1		
합 계				100

□ 문제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전문에 걸쳐 창업보육센터의 업무내용의 통일성 및 균형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차등 지원되는데, 평가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기준과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창업보육센터 측의 혼란만 가중됨 (중기청의 경우 첨부한 【별표 4】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나, 지자체의 경우 각기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청장 권한의 모호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대응투자 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지방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센터장) ④ 지방청장은 센터장의 장기근무체제 운영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 성과를 반영한 보육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시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매니저) ⑤ 지방청장은 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 시 매니저 보유여부, 매니저의 장기근무체제 및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비아이넷 관리) ② 지방청장은 비아이넷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충실도를 매 분기 말 에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비 지원을 위한 운영능력 평가 시에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운영 실적 평가 기준은 전년도 운영 실적 및 성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차년도 운영 계획은 고려하지 않아 창업보육사업의 연계성을 떨어뜨리고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미래지향성이 희석되며, 이는 결국 센터의 관리 소홀을 유발케 하여 재투자비용의 확보 상의 애로를 초래함
- 현재 창업보육센터 간의 경쟁 유발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영 실적 평가에 의한 등급제를 통한 순차적인 운영지원금 지급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다수 존재하는바, 평가기준의 개선에 앞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색 또는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청 고시인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상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정
-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평가 항목을 재구성하여 현행 사후적인 성과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차년도 운영 계획 평가를 도입·보완하는 방법으로 운영 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제2절 조세 · 부담금

1. TIPS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개선

□ 규제 법률 : TIPS 프로그램 총괄 운영 지침

□ 현황

- TIPS 민간부담금 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변경
- 중소기업청 TIPS의 창업팀 지원 R&D 자금 수주시, 기존 민간부담금 비율은 10%(현금 2%, 현물 8%)이었으나, '16년부터 기존 민간부담금비율 10%에서 20%로 상향 조치(현금은 10% 이상, 현물은 10% 이하)

□ 문제점

- TIPS프로그램 선정시, 창업기업이 2년간 최대 5억원을 지원 받는 것을 가정하면, 기존 현금 부담금이 1천 만원 이었으나, 16년부터는 현금부담금을 최대 5천 만원 까지 부담되는 현상 발생
- 이러한 현금 부담금 상승은 초기 Start-Up기업에게는 과도한 조치로 경영 애로와 현금 압박 등의 가능성 증가

□ 개선방안

- 민간부담금의 현금 부담을 인하
- 16년 민간부담을 20% 중 10%인 현금부담을 인하 필요
- (기대효과) 현금부담을 인하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성공 장려

2. 창업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담금 완화

□ 규제 법률 : 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현황

- 공동관리규정 내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제12조 제3항 및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의4에서 규정하고 있음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은 총 연구개발비의 75%이내를 부담하므로, 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이내를 부담하게 됨

공동관리규정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생략)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생략)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2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

<p>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p> <p>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p> <p>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p>		<p>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p>
--	--	---

□ 문제점

- 창업 초기에는 수익에 비해 투자가 많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인건비가 아닌 R&D를 위한 추가 자금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R&D과제 참여 시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스타트업 기업 및 벤처기업도 기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위와 같은 매칭비율이 적용됨
 - 정부부담: 75%, 기업부담: 25%
-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 후 5년간 생산성이 가장 높지만, 5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의 비율은 50%에 불과하여 일반기업보다 낮게 나타남(중기청, '10)
 - ※ 생산성평균증가율: 업력 5년미만(7.2%), 6~10년(0.0%), 11년이상(3.1%)
 - ※ 벤처기업의 생존율: 업력 5년이상(50%), 10년이상(16%)
 - ※ 일반기업의 생존율: 업력 5년이상(62%), 10년이상(34%)
 - ※ 창업 기업 중 적자 기업비중(국세청) : 56.5%('09)→63.6%('10)
- 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3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협의하면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개선방안

- 참여기업이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15% 이내로 완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창업기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 규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시행령 제59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개발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정금액(총공사비의 20% 이내)을 예치하거나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

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문제점

-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은 위반행위를 가정한 보증금의 예치 성격으로서 총공사비가 크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창업기업(특히 초기 기업들)들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함
- 또한 실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

□ 개선방안

- 창업기들이 제조공장 등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위법 행위 및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부과하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제도는 행정편의주의의 한 일례로 판단
- 개발행위 이행부담금의 경우도 이를 준용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개발행위 이행부담금 예치를 면제토록 해주어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0조 1항을 개정하여 이행 보증금 예치 면제 대상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개발행위 이행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항 신규로 삽입 필요

4.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인정

□ 규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현황

- 주체가 다른 경우를 말하고 있음. 창투사는 양도소득세 감면해주는데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처분하여 회수한 금액은 과세 감면 혜택 없음
- 기술창업 투자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투자회수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제한특별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 적용 중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투자한 자회사의 사후 지분 회수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p>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2. 생략</p> <p>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이하 생략)</p>
--

□ 문제점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자회사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필요성
- 기술사업화기업 투자 활동을 전개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적용하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투자 활성화에 기여

□ 개선방안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자회사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p>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관한 비과세)</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p>	<p>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관한 비과세)</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p>

<p>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생략)</p> <p><u>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동법에 따라 설립한 자회사, 벤처기업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u></p>
---	---

제5장 기술지주회사

제1절 설립

1.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비율 완화/폐지

□ 규제 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제2항 제3호
기촉법 제21조의3 제4항

□ 현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 제36조의2 제2항 3호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 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 출자하여야 함

산촉법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생략)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 기촉법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그 비율을 고정하지 않음

기촉법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생략)

⑤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지주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 문제점

- 기술출자를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평가비용이 건당 2~3천만원임
 - 회사 설립 및 운영비용이 아닌 비용 소요가 발생

산축법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서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기촉법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 추후 기술지주회사 증자를 대비하여, 기술지주회사에 기술 현물출자 비율을 처음부터 자본금의 100분의 80 내지 100분의 90이상으로 현물출자하는 기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처음부터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추후 기술 현물출자 규정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기술을 현물출자해야 함(필요한 기술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100분의 30 초과 규정만을 맞추기 위한 불필요한 기술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루어짐)
- 기술이 자회사로 가지 못하고 지주회사가 계속하여 보유함

□ 개선방안

- 산축법에서 현물출자 하한선 비율 폐지 또는 비율 완화

2.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의 주식 보유율 규정 개선

- 규제 법률 : 산축법 제36조의2 제2항 제3호
기촉법 제21조의3 제4항

□ 현황

- 산촉법 제36조의2 제2항 3호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산학협력단 등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함

산촉법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생략)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 기촉법 제21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공공연구기관은 해당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함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음)

기촉법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④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연구기관은 주식을 보유하는 데 있어 정부의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

□ 문제점

- 기술지주회사의 규모가 커질 수록 대학이 계속 돈을 투자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기술지주회사가 성장하려면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함
-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등을 부담 가능성도 발생함
- 설립주체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 경영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이유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정하였다면, 반드시 100분의 50 초과로 비율을 고정해둘 필요 없음
 - 주식을 통한 지배력, 경영권은 설립주체의 기술지주회사 운영방식 내에서 확보될 수 있음
 - 법령에서 비율을 고정해둠으로써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에 사용될 자본을 주식 매입에 사용하여 경영상 불합리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함

□ 개선방안

-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에는 100분의 50 초과 보유율을 유지하되 기술지주회사 가치 상승 시에는 주식 보유율 기준 완화 또는 보유율 폐지

3.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진입규제형식 일치화

- 규제 법률 : 산촉법 제36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기촉법 제21조의3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4

□ 현황

- 산촉법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함
- 기촉법에 따르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절차는 상이하나, 실제 제출하는 설립계획서는 동일한바, 등록만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이 하자가 없다면, 산촉법 설립인가 절차를 기촉법과 동일하게 등록으로 절차 완화하는 방안 고려 필요함

□ 문제점

- 두 절차는 제출하는 서류 등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 절차는 인가와 등록으로 그 성질이 매우 상이함
 - 인가는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로, 산촉법상 기술지주회사는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설립이 완성됨
- 상법상 회사 설립에 행정부의 인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촉법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인가를 조건으로 함

□ 개선방안

- 산촉법상 기술지주회사 설립도 기촉법과 같이 설립 후 등록하는 방식으로 수정

4.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 규제 법률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 현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4호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생략)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생략)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문제점

- 현물출자 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는데, 기술지주회사 설립시 산학협력단등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여야 하는 등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시 현물출자가 많이 발생함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설립을 제한하는 법규로 작용됨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현금 유동성에 영향을 주며, 기술현물출자비율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게 현금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발생함
- 기술현물출자 비율을 결과적으로 낮추게 되는 현상 발생 가능함

□ 개선방안

- 강제적 규정된 현물출자는 한시적으로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개선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4. (예시)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기술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부칙

제X조(유효기간)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XXXX년 XX월 XX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에 대한 불산입을 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생략)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5.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대도시 소재 산학협력단 중과세 면제

□ 규제 법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 현황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해서 대도시 법인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기술지주회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증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생략)

1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 33. (생략)

□ 문제점

- 기술지주회사는 법인 등록 시 지방세법에 따른 세액을 납부
- 대도시(서울 등) 소재 기술지주회사의 자본증가 등의 경우에는 증과세에 따라 자본금의 1천분의 12(1.2%)를 납세³⁾
 - 대학별 출자액/납세액(백만원, '11): (고대)9,421/113, (서울대)7,821/93 등
 - 대학교가 대도시(서울 등)에 소재하고 있어 여지가 없이 증과세 부과 대상

□ 개선방안

- 대도시 법인 증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납부액 감면함
 - 기술지주회사의 법인 등록 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법인 등록 및 자본 증가 등 1.2%의 세율을 이유로 설립을 미루면 실질적 세수액은 0이지만, 증과 면제에 따라 법인 등록이 활성화 되면 각 법인마다 0.4%만큼 세수 가능함

3) 선진특허강국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특허정책 연구

제2절 운영

1.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자회사 인수 제한 규정 개선

□ 규제 법률 : 산촉법 제36조의3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기촉법 제21조의4 제1항

□ 현황

- (산촉법 제36조의3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기술지주회사는 산단,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
 - ① 직접 자회사를 설립
 - ② 1. 산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 2. 실험실 공장
 - 3. 연구소기업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음
- (기촉법 제21조의4 제1항) 기술지주회사는 ①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 설립하거나 ② 제3의 회사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음

산촉법	기촉법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u> 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u>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	--

□ 문제점

- 산촉법은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시킨 반면, 기촉법은 한정시키지 않음
- 두 법령이 동일한 개념의 기술지주회사를 다룬다면, 상기와 같이 같은 내용의 조항이 서로 상세한 수준이 다르면 현장에서 자회사를 설립 시 혼동이 야기됨

□ 개선방안

- (1안) 두 법령 간 일치 유도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대상을 넓게 보는 기촉법 방향으로 일치
- (2안) 산촉법 시행령 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목록을 추가하여 다자회사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완화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 (예시)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2.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직원 겸직 관련 규제 개선

□ 규제 법률 : 산촉법 제36조의7, 기촉법 제21조의7

□ 현황

○ 기술지주회사의 운영 사항에 관하여 두 법이 불일치

- 산촉법의 경우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이를 위해 휴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필요
- 반면, 기촉법의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 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 불필요

현행 산촉법	현행 기촉법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문제점

- 산촉법의 경우 겸직 및 휴직에 관하여 ‘허가’라는 행정 절차를 요구하는데, 이는 기촉법보다 더 어려운 수준의 절차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학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겸직 및 휴직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면,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설립 또는 운영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 기촉법은 자회사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반 직원으로의 근무를 다루지 않으며, 겸직에 관한 사항이 없음
 - 자회사와 직원을 포함하고 겸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기술지주회사는 겸직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겸직의 용이성이 요구됨
 -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 구성: (전담대표)4명 < (교수 및 산단장 겸직)22명

- 전체 기술지주회사의 인력구성(2013.12 기준): (전담직)64명 < (겸직)79명

□ 개선방안

○ (1안)산촉법 및 기촉법 관련 조항 수정

현행 산촉법	개정안
<p>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p>	<p>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p>

현행 기촉법	개정안
<p>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③ 생략</p>	<p>제21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직원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기 위해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p>

기촉법 시행령	개정안
없음	제25조의7(기술지주회사의 운영 등) 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2안) 국립대학교의 교직원 중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의 규율 대상인 경우에는 겸직 및 휴직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구분하여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겸직 및 휴직 규정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3안) 기술지주회사의 겸직과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겸직을 구별하여, 기술지주회사 운영에 따른 겸직(휴직포함)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회사의 업무를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기술창업을 위한 휴직으로 보고 휴직 규정 대폭 완화

제6장 기술혁신

제1절 절차개선

1.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판단대상 확대

□ 규제 법률 : 기촉법 제35조의2

□ 현황

- 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라 대학·연구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은 세계적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
- 미활용특허의 집중관리를 통해 통합적인 기술시장을 형성하고, 관련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요-공급이 연계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제도 필요
- 이에 따라, 기촉법 시행하여 국내에 '특허신탁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기촉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이전, 기술료의 징수·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 문제점

- 영리법인·기관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판단대상에서 제외

※ 기술신탁관리업 지정현황(5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8),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09), 한국보건의산업진흥원('10), 한국지식재산전략원 R&D특허센터('11), 농업기술실용화재단('13)

동법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3. 삭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기술이전·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 IP신탁 전문성을 지닌 민간 영리법인·기관 등의 기술신탁 시장 진입 허용 필요
- 미국은 신탁업에 대한 제한이 없이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ies)* 등 민간 중심으로 특허신탁 활성화
 - * (예) Intellectual Ventures, InterDigital, Ocean Tomo, Acacia Research 등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기술신탁 시장 진입 허용하더라도, 허가받은 이후에 각 회사에 대한 관리 규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 진입 허용을 하더라도 특허괴물화 되는 등의 문제점 발생 소지 감소

동법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신탁사무의 방법) 생략

제35조의4(신탁사무의 위탁) 생략

제35조의5(기술신탁관리기관의 의무)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관리하는 기술등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의6(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5조의7(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의8(과징금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35조의7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선방안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도 원칙적으로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판단대상 내 포함
- 민간 지식재산 신탁업 등 지식재산서비스업 활성화로 연구개발성과 활용도 제고 및 신규고용창출에 기여

제2절 바이오

1. 생산공정이용시설 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에 관한 규제 공백 제거

- 규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1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현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의3 제1항은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동법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①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

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 용시설에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이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23조의13(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취급·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방안

2.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의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문제점

- 생산공정이용시설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최종 산물로 생산하기 위한 생산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목적하는 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시설을 말함
- 생산공정이용시설은 시설 내에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방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확산방지 조치를 하여 운영하는 밀폐이용시설임
- 관련 규정이 마련될 당시에는 밀폐이용의 대상이 미생물에 한정되었으나,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미생물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도 밀폐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이용하는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식물, 유전자변형동물이 모두 포함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동법 제22조의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①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동법 제22조의4의 제목과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법 제22조의4(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①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제한 규제 완화

□ 규제 법률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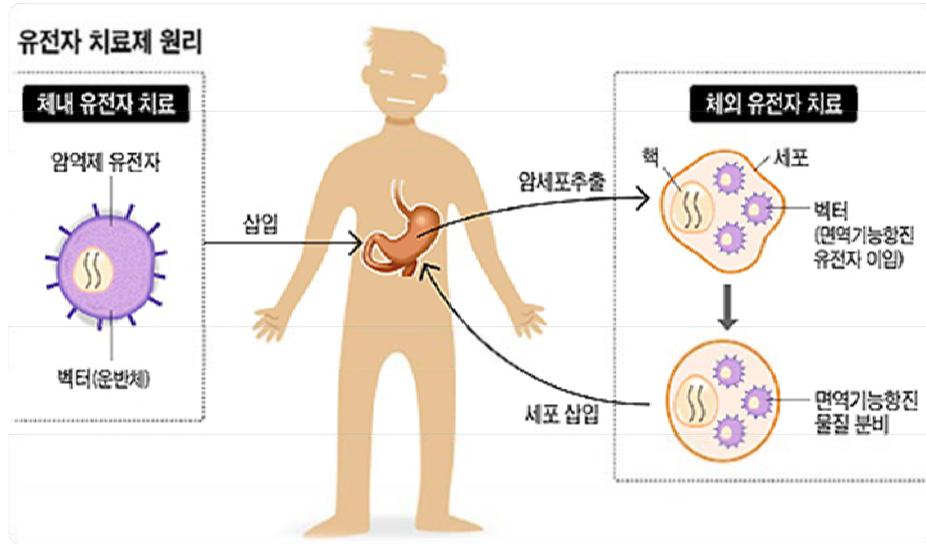
□ 현황

-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민경제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추진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증대함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네 가지 질환을 말함

- 유전자 치료제는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을 의미하는데, 희귀·유전 질환이나 퇴행성·난치성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효과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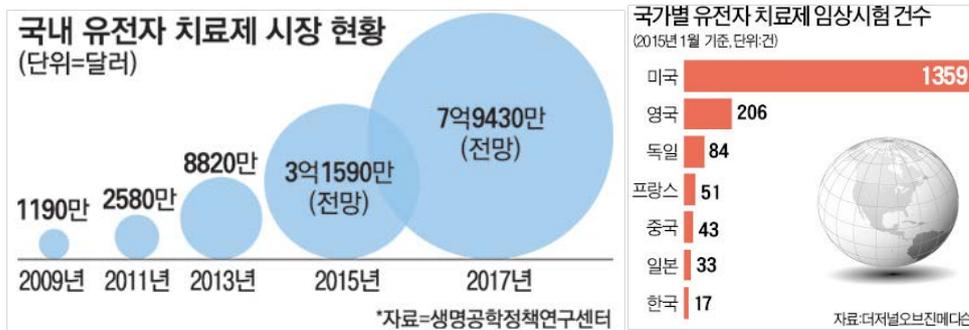
* 생물체의 세포, 단백질, 유전자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의약품. 합성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좋고 고유의 독성이 낮아 부작용이 적음



출처: 조선일보

[그림 6-1] 유전자 치료제 원리

- 국내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2008~2017) 64.7%로 고성장이 전망됨
 - 바이오메드, 코오롱생명과학,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신라젠 등 기업을 중심으로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6-2] 유전자 치료제 현황

- 유전자 치료제는 부가가치가 높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만 R&D가 가능함
 - 지난해 한국의 유전자 치료제 임상건수*는 17건에 불과하여, 미국(1395건)은 물론 중국(43건)에도 뒤처짐
 - * 신약 개발단계: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비임상시험 단계후 임상시험계획(IND, Investigational New Drug)을 제출한 뒤 1상, 2상, 3상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승인신청(NDA, New Drug Application)을 제출하여 허가당국(식약청, FDA 등) 승인을 받은 뒤 시판함

- 2003년 이후 진행된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중 코오롱 생명과학의 “티슈진-C”*만이 국내 시판 허가를 앞두고 있음
 - * 퇴행성 관절염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통증 완화와 관절강 구조 개선 기능을 목표로 연골 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TGF- β 유전자를 결합해 만들어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의 개정으로 제4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삭제되고, 제2항이 신설되어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를 관한 연구의 허용기준을 확대함
 - 그러나 바이러스성 벡터의 직접 주입과 같이 체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치료제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효과가 현저히 우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연구를 허용함

개정 전 「생명윤리법」	개정 후 「생명윤리법」
<p>제47조(유전자치료) ① 유전자치료를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u>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p> <p>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p> <p><u><신 설></u></p> <p>②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47조(유전자치료) ① <u>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단서 삭제></u></p> <p>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p> <p>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p> <p>② <u>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를 관한 연구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u></p> <p>③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 앞서 언급한 “티슈진-C”의 경우에도 생명윤리법 제47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바,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움
- 미국, EU, 일본 모두 약사법 및 하위 고시를 통해서 유전자치료제의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우리나라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윤리법과 같이 약사법 이외의 특별법으로 유전자치료제를 이종으로 규제함

□ 문제점

- 개정된 생명윤리법 제47조에 따르면,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 치료제 일부 분야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반면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치료제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존재함
 - 이는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동법 제47조(유전자치료) ①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②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유전자치료 연구”와 달리,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 치료 연구는 동조 제1항 각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허용되는바, 양자를 다르게 규정한 취지가 불명확함

- 동조 제1항 제1호가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4대 중증질환이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제2호 규정 중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함
 - 도리어, 생명윤리법 개정 시 삭제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가 허용된다는 동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는 질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여전히 실익이 있다고 보여짐
- 반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3조 제2항 각 호는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품목허가가 가능함
- 생명윤리법 제47조는 유전자치료제의 품목허가가 아니라 유전자치료제에 관한 연구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연구를 통하여 제품이 개발되고 이후 품목허가를 받는 것이 기술 사업화 과정인데, 품목허가의 경우와는 달리 연구는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됨
- 유전자치료 연구에는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약개발자 및 업체들은 연구에 신중을 기하는 편인데, 연구 허용 범위가 허가 범위보다 더 제한되고 있어 선뜻 연구를 시작할 수 없게끔 하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속도가 더더짐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유전자치료제”란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인체에 투입하는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품목 허가의 처리) ① 단위 제형 당 주성분의 함량과 제형, 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은 동일한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1개 품목으로 제조판매(수입)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품목허가”라 한다)한다. 다만, 제제의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새로운 균주를 사용하거나 제조방법이 명백히 다른 별도의 품목으로써 국민 보건 상 따로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유전자치료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목허가를 한다.**

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

하는 질환의 치료제의 경우

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제가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명백하게 개선된 경우

3. 제1호 질환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제 등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질병에 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람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형을 통하여 치료하는 등 윤리적 문제가 우려되는 유전자치료제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개선방안

- 생명윤리법 제47조 제1항의 경우와 제2항의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통일적으로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전자치료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 제1호 및 제2호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제3호를 신설

현행법	개정안
<p>제47조(유전자치료) ① <u>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의 <u>모두에</u>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u></p> <p>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u>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u></p> <p>2.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u>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u></p> <p><신 설></p> <p>② <u>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제1항</u></p>	<p>제47조(유전자치료) ①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p> <p>1.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u>질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u></p> <p>2. ----- <u>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의해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u></p> <p>3. <u>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u></p> <p>② <삭 제></p>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유전자치료는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현행과 동일)

- 위와 같은 개정안에 따른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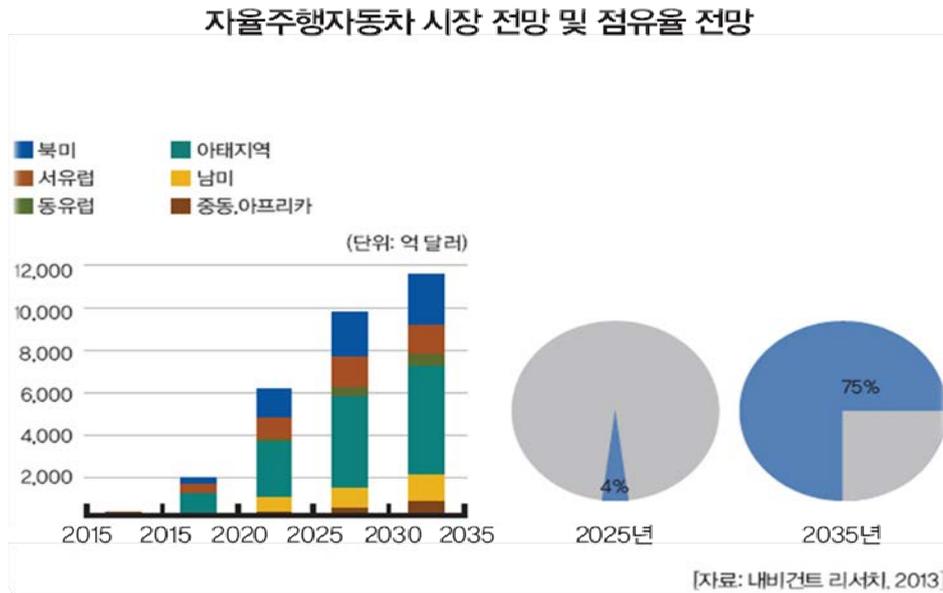
제3절 자율주행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 규제 법률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현황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주행환경을 인식해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운행이 가능한 인간친화형 자동차
 - 영어로는 Autonomous Vehicle 또는 Self-Driving Car라고 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Smart Car라는 용어를 사용⁴⁾



[그림 6-3]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전망

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미국, 유럽, 일본”,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6-06호, 5면.

- 최근 자동차 산업은 정보통신과 위성항법 등 첨단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체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2020년경 양산형(Mass Production Type) 자율주행자동차 출시 예정임
 - 2035년경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의 75%가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추정됨
-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단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차간거리 유지 및 차로유지 등 자율주행 핵심기술을 상당부분 개발을 완료했고 2단계 수준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음

〈표 6-1〉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단계 구분

수준	정의	개요
Level 0	비자동 (No Automation)	- 운전자가 항상 브레이크, 속도조절, 조향 등 안전에 민감한 기능을 제어하고 교통 모니터링 등 안전 조작에 책임
Level 1	기능 특화 자동 (Function-specific Automation)	-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행 혹은 충돌 임박 상황에서의 일부 기능을 제외한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 예)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차량 자세제어, 자동브레이킹
Level 2	조합 기능 자동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 어떤 주행 환경에서 두 개 이상의 제어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 단, 운전자가 여전히 모니터링 및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예) 스마트크루즈컨트롤과 차선중앙유지, 핸들과 페달 제어
Level 3	제한된 자율주행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 특정 교통 환경에서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 - 자동차가 모니터링 권한을 갖되 운전자가 제어가 필요한 경우 경보신호 제공 - 운전자는 간헐적으로 제어
Level 4	완전 자율주행 (Full Self-Driving Automation)	- 자동차가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 - 운전자는 목적지 혹은 운행을 입력 -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 운행에 대해 책임

※ 출처 : 미교통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2013

-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국가 모두 아직까지 법·제도 및 규제와 관련한 통일된 접근 방식은 없으나, 향후 상용화 시점을 대비하여 세부 성능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려는 노력 중에 있음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해졌으나,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도입이 어려워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연구 자체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 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제점

- 운전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 「도로교통법」의 경우, 레벨2의 자율주행자동차까지는 수용이 가능하지만 레벨3에 이르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동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불가피함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생략)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 「도로교통법」제48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조작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핸들과 브레이크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은 본조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됨

- 또한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은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제6호), DMB 등의 영상표시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두거나(제11호) 이를 조작하는 것(제11의2호)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이므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11.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 호 생략)

11의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 개선방안

-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를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도 동법 적용대상이 되는 “자동차”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현행법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후문 신설)</p> <p>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p>	<p>제2조(정의) ----- -----.</p> <p>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u>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도 포함한다.</u></p> <p>(각 호 현행과 동일)</p>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 5) (생략)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	--

-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자”라는 문구를 일일이 개정할 필요 없이 동법 제2조에 운전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면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를 이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예시) 18의1.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조작·운행하는 자를 포함)을 말한다.
 - 이와 같은 규정의 신설로 자율주행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4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짐
-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의 제10호, 제11호 및 제11의2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

현행법	개정안
<p>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 라. (생략)</p> <p><u>(신설)</u></p> <p>11.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p>	<p>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 -----.</p> <p>10. ----- ----- -----, ----- -----.</p> <p>가. ~ 라. (현행과 동일)</p> <p>마.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p> <p>11. ----- -----</p>

<p>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나. (생략)</p> <p>(신설)</p> <p>11의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단서 신설)</p>	<p>----- ----- ----- -----, ----- ----- -----.</p> <p>가. 나. (현행과 동일)</p> <p>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p> <p>11의2. ----- -----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2. 운전자 중심 관련 규정 전면적인 개선 추진

□ 규제 법률 : 도로교통법 제2조

□ 현황

-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구조·부품·성능 등의 안전을 규율하지 않고 운전자의 운전행위와 도로이용자의 보행행위를 규율함
- 현행 「도로교통법」중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에 탑승하여 주행을 주관하는 사람이며, 동법은 운전자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2조제28호에 의하면 서행(徐行)을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2조제29호에 따른 앞지르기는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동법 제2조제30호는 일시정지를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규정

□ 문제점

-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장치는 운전자를 대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운전자가 되는 기계장치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규율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이 운전을 할 필요성이 없는 자동차이므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서 운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자와 관련하여 정의에 관한 규정에서부터 전면적인 체계개편이 필요
- 「도로교통법」이 현재 운전자의 행위를 규율하는 시스템에서 자동차나 자율주행장치를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 필요

현행법	개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3. (생략) 24. “주차”란 <u>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u> 25. “정차”란 <u>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3. (현행과 같음) 24. “주차”란 <u>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행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u> 25. “정차”란 <u>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u>

<p>26. - 27. (생략)</p> <p>28. “서행”(徐行)이란 <u>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u></p> <p>29. “앞지르기”란 <u>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u></p> <p>30. “일시정지”란 <u>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u></p>	<p>26. - 27. (현행과 같음)</p> <p>28. “서행”(徐行)이란 <u>차가 즉시 정지될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u></p> <p>29. “앞지르기”란 <u>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u></p> <p>30. “일시정지”란 <u>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u></p>
---	--

제4절 빅데이터

1. 빅데이터 기술 상용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규제 완화

□ 규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 현황

○ 빅데이터 기술 활용 영역의 비약적 발전 - 금융·의료·IT

- 금융, 의료,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사업적 활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금융영역의 경우 빅데이터 등 데이터분석기술로 인해 서비스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영역 중 하나임*

* Gartner 설문에서 빅데이터 관련 투자에 적극적인 산업으로 보험 산업이 포함되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Gartner, 2013). PWC가 보험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대상자의 91%가 빅데이터가 향후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차별화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설문대상자의 90%는 보험사의 비즈니스모델 변화, 발전에 있어 빅데이터가 주요 동인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PWC, December 2013)⁵⁾

○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규제현황

- 선진기술이 발달한 세계 각 국에서 빅데이터 산업의 법률적 인프라 구성을 염두에 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규제 개선을 하고 있음

〈표 6-2〉 국가별 개인정보 규제현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없으며, 개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용이 보장 - 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 법령 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정보는 「건강보험 이천과 책임에 관한 법(HIPAA)」에 따른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비식별 조치 기준 제시 ※ 비식별 조치된 의료정보는 제한 없이 이용 가능

5) 김현경,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8권 제1호, 61p, 재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임상적 보건의에 대한 건강 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HITECH Act)」에서는 비식별 조치된 건강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미적용 「가족의 교육적 권리 및 프라이버시 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은 비식별 조치된 학생기록에 대해 별도의 동의없이 배포 가능
유럽 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역내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인 「EU 개인정보 보호 지침*(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서문에서는 익명화된(Anonymized) 정보는 동 지침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은 각 회원국이 국내법을 제정·시행하는데 적용되는 가이드로서 강제성은 없음 지침에는 가명처리된(Pseudonymized) 정보는 과학적 연구, 역사연구, 통계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처리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회원국이 정하도록 함 최근 EU에서 단일한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EU 의회를 통과('16.4.14., 2년 후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침의 가명정보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GDPR에 명문화 - 다만,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의 범위가 공익, 과학적 연구, 역사연구, 통계 목적으로 일부 변경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일본 정부는 IT종합전략본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5.9월 개정, '17.1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익명가공정보 개념 신설 - 익명가공정보는 복원 불가능도록 안전 조치를 함을 전제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익명가공정보 취급 사업자*에게 일정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의 익명가공정보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 ** 복원불능 정보 작성, 정보누설 방지, 정보항목 공개, 제3자 제공 시 공표, 식별행위 금지, 안전조치 의무 등 부담 일본 정부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비식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완전한 익명화'는 있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익명화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제시하는 방안 논의 중

출처 : 관계부처협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우리나라 법률 현황

- 빅데이터 관련 법률은 현재 없으며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16. 5. 30. 국회 빅데이터법안 발의)
-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기본법처럼 있고 개별 분야마다 산발적으

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

- 금융분야는 신용정보법, 의료분야는 의료법 등

○ 정부 정책 현황

- 14년 방통위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매뉴얼 발간
- 15년 5월 정부 최초 빅데이터 전담조직인 '빅데이터분석과' 신설(정부통합전산센터 내)
- 16. 6. 30.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발간(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과 지원·관리 체계 마련
- 2016년 관계부처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단계별 조치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

〈표 6-3〉 단계별 조치사항

① 사전검토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법적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
② 비식별조치	• 정보집합물(데이터 셋)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
③ 적정성평가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
④ 사후관리	• 비식별 정보 안전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비식별 정보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수행

출처: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 ●



[그림 6-4] 2016년 관계부처협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문제점

- 빅데이터 기술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 미비
- 개별적 사전 동의 원칙의 예외 규정 부존재
-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동법)은 제15조에서 사전동의를 구함이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생략)

-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비식별화된 정보에 관하여는 동법 내에 따로 정의하고 있지도 않으며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의 법률은 현재 없는 상황
- 비식별화된 정보의 경우에도 사전동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법률의 미비로 적용 불가능

-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대량의 비식별화된 집단정보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사전 동의를 요하는 동법의 규제는 이를 막는 큰 장애
- 제3자 제공에 대한 협소한 예외규정
 - (통계 및 연구 목적만 가능) 설사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적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동의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법에서 제한(동법 제18조)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생략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동법 제18조에서 제3자 제공에 대한 예외규정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서 그 범위를 해석하기엔 법률문언 상 모호하며 불명확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라고 하면 비영리 목적으로만 제공가능하다는 문언 그대로의 축소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
-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체는 대부분 영리목적의 이윤창출을 추구하는 기업이 대부분임에도 동법 제18조 제1항의 예외규정은 기업의 빅데이터 기술 활용에 법률적 규제로서만 작용
 - 또한 동법 제19조에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동의 없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동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이에 대한 예외조항도 상당히 협소하여 빅데이터 기술 활성화의 걸림돌

□ 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여 우리나라와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법환경이 비슷하기에 이하 이를 참고한 규제개선을 제시
- 최근 일본은 개인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익명가공정보 개념 신설
- 익명가공정보는 복원 불가능도록 안전 조치를 함을 전제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법에서 개별적 사전 동의 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

- 따라서 사전동의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법의 원칙으로 두되 관련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

○ 동법 제18조 제1항 4호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제거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비식별화* 조치가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개선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다른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동 규제개선방안에서는 '복원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

** 이 경우 시행령 혹은 법률에 비식별 조치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전제

현행법	개선안
<p>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u>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u>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생략 4. <u>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u> <p>(이하 생략)</p>	<p>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생략)</p> <p>4.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u>비식별화 조치가 된 개인정보를</u> 제공하는 경우</p> <p>(이하 생략)</p>

2. 개인정보 제공 제한 규정 완화

□ 규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 현황

- 미국에서는 Acxiom, Experian, Epsilon, CoreLogic, Datalogix, eBureau, ID Analytics, inome, PeekYou, Rapleaf, Recorded Future 등 전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판매하는 데이터브로커(data broker) 또는 정보브로커(information broker) 영업을 성업 중이며 (3,500~4,000개 회사로 추정), 판매된 개인정보는 타겟 광고 및 마케팅(target advertising and marketing)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유럽연합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카테고리 방식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도 허용되고 있어, 불특정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 1995년 EU 개인정보지침 제10조(c)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정보의 수령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수령인의 범주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도 허용하고 있고, 2016년 EU 일반개인정보규칙 제13조제1항(e)도 수령인의 범주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을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유럽연합에서도 기업체의 이메일리스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메일 리스트, 메일링 리스트, SMS 리스트, 마케팅 리스트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데이터 판매상이 존재함(Databroker Ltd. 등)
- (법률규제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법 제17조제2항)
-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제공받는 자의 이름 또는 상호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알릴 때에도 제공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이름을 알려야 함
 - 제공받는 자의 이름을 일일이 알리지 않고 카테고리(범주) 방식으로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종류나 범주로 알리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함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범주나 종류로 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법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문제점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이름을 일일이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더라도 불특정다수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능함
- 따라서 국내에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개인정보 판

매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시장을 통한 개인정보 구입 역시 사실상 불가능함

- 그 결과 개인정보의 암시장이 발달하고,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계열사 및 협력회사들 사이에는 동의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가 자유스럽게 공유될 수 있지만, 대기업 그룹에 속하지 못한 중소기업, 개인기업, 스타트업 등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방법이 없음
- 최근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중소기업, 개인기업, 스타트업 등도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는 여전히 대기업 그룹 회사들 사이에서만 공유가 가능하여 개인정보 활용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개선되기 어려움

□ 개선방안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를 개정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에 대한 제공 동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안
<p>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p>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5절 그 외 신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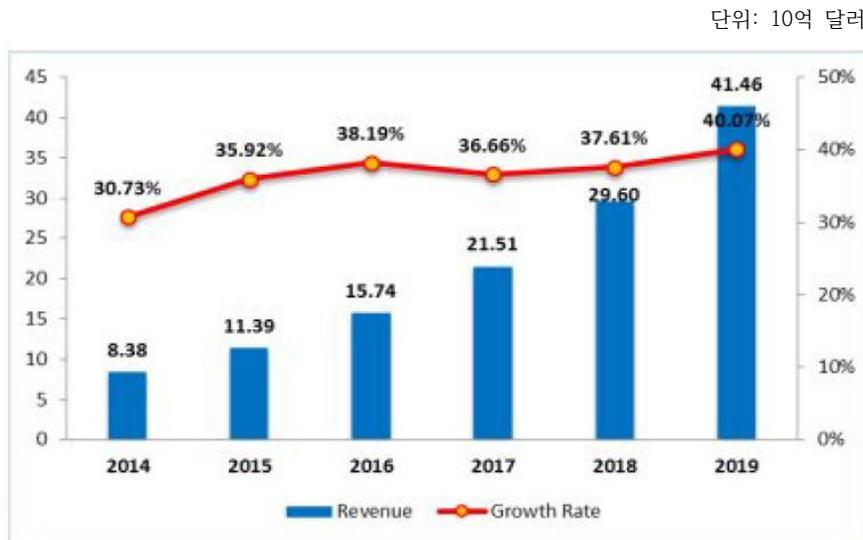
1.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 금지의 원칙 완화

- 규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1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현황

- 최근 증강현실*을 활용한 게임이나 내비게이션 등의 출현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간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는 추세

* 현실 공간에 가상 이미지를 결합하는 기술로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인 가상현실과 구별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위치정보서비스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연구, 2015

[그림 6-5] 2014년-2019년 세계 LBS 시장규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내 지도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단서(但書)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나. 가목 외의 자가 시행하는 측량 중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8.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를 말한다.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신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창업이 활발해져 과거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O2O의 일종인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등 근래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는 기업들의 서비스는 지도를 기반으로 함

*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를 운영. 이를 통해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음

** 스마트폰 기반 교통서비스를 서비스하는 미국의 교통회사(운송 네트워크). 이 기업에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국외에 서버를 둔 업체들과 국외 서버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세한 지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

〈표 6-4〉 LBS 서비스 세부제공 항목

	인터넷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인터넷 개발 폐쇄적인 국가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한국
3차원(3D)지도	○	○	○	○	×
자동차 길찾기	○	○	○	○	×
도보 길찾기	○	○	○	○	×
자전거 길찾기	○	○	○	○	×
대중교통 길찾기	○	○	○	○	○
실시간 교통상황	○	○	○	○	×
자동차내비게이션	○	○	○	○	×
실내지도	○	○	○	×	×

출처: 구글

□ 문제점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국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지도는 영문으로 된 지명 기재가 불완전하여 길 찾기, 경로 검색 등에 불편을 초래
 -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요구
- 해외 진출을 꿈꾸는 국내 기업의 경우: 지도를 기반으로 융합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내용과 글로벌용 서비스를 별도로 만들어야 해서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테스트도 해외에 나가서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바 이는 해외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
 - (예시) 운송 회사들의 수·배송 관리 시스템(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s; TMS)*의 경우, 국내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기반으로 개발되므로 해외 진출 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할 필요성
 - * 고객 주문 정보를 바탕으로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수·배송 업무에 대한 배차 지시, 정산 관리, 차량 Tracking 등 운송 과정을 실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 본 규제를 찬성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현재 해외에서도 아무 제약 없이 국내 보안시설의 자세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
 - 구글, MS, 애플 지도의 글로벌 버전이나 지리정보(GIS) 업체들이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위성사진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보안시설이 이미 노출된 상황

□ 개선방안

- 법률이 국내 지도를 국외에 반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 것은 ‘원칙과 예외의 전도(顛倒)’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 요구
 -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인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삭제함이 타당
 - 삭제하지 않은 법률 제16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을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의 예외적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원칙과 예외의 전도’현상을 해소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p>제 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제 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의 예외적 금지) ① (삭제)</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현행과 동일)</p>
<p>제 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p>	<p>제 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의</p>

<p>금지 ①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공공측량성과 중 지도 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누구든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에서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예외적 금지 ① (삭 제)</p> <p>② (현행과 동일)</p>
--	--

- 이러한 규제 개선을 통하여 국내의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 갈라파고스 현상(Galapagos Syndrome)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역량 강화에 일조하여 증강현실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p>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개정안</p>
<p>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 6. (각호 생략)</p> <p>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 5. (각호 생략)</p>	<p>제16조 (삭 제)</p>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p>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1부 2. 여권 사본 1부(외국인만 해당한다) 3. 반출할 내용물 1부(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p>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0조 (삭 제)</p>

□ 참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복제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나 기본측량기록을 복제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없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개인 레저용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법 규제개선

□ 규제 법률 : 항공법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등

□ 현황

○ 시장조사업체 마켓츠앤마켓츠(MarketsandMarkets)가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 산업 시장 규모는 2014년부터 연평균 12.31%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19억 달러(약 2조 1000억 원)에 도달할 전망

- 이는 대중 접근성이 높은 소형 드론의 확산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중량(연료 제외)	150kg 초과	150kg 이하
구분	무인항공기 (항공기급)	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급)
등록/신고 대수	없음	240대
자료: 국토교통부, 2014.03.31 기준		

[그림 6-6] 무인기체의 현행법상 구분 기준

○ 드론산업이 무인조종, 초경량, 초소형이란 최첨단 기술적 특성을 나타내며 독보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며 산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

○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법에서 모든 비행체의 비행에 관한 규제

- 법률적 규제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드론의 상용화를 저해

○ 현행법에 따르면 연료를 제외한 기체가 150kg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항공기급)로 분류되며 150kg 미만이면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급)로 간주

- 통상 군수용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12kg를 기준으로 한 번 더 기준이 나뉘며, 사업용·비사업용 특별한 구분없이 드론 중량 12kg를 넘어설 경우 사용자는 항공청에 신고 사항

- 12kg 미만일 경우 별다른 신고 없이 개인 소장용으로 사용 가능함. 동호회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기체는 대부분 후자에 해당

중량	12kg 이상	12kg 미만
신고 필요 여부	○	× (사업용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그림 6-7]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기준

□ 문제점

- 항공법의 경우 다루고 있는 그 규제대상이 상당히 넓은데 드론산업 또한 ‘초경량비행장치’라는 항목으로 항공법에서 규제하고 있음. 이 항목에는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 외에도 인력활공기(패러글라이딩 등), 동력비행장치, 기구류 등을 포괄

항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28.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力飛行裝置), 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드론 산업은 일반 항공기보다 크기가 작고 무게가 현격히 가벼우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비행장치를 의미
 - 이에 첨단 기술이 더해져 드론 산업 내에서도 다양한 무게와 크기가 존재하며 그 용도도 다양
-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무인비행장치를 통틀어 무게를 기준으로 하여 비행 및 신고 등의 승인기준을 규정
 - 특히 드론산업의 특성에 따른 세부적 규제가 불가능하여 드론 내에서도 개인이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초경량, 초소형 드론의 경우에까지 법률적 제재 적용
 - 최근 7월 시행규칙 제66조의 개정으로 비행승인에 대한 규제가 위와 같이 12킬로에서 25킬로 이하로 완화되었다고 하나, 규정완화가 법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신고규정의 경우 등 여전히 12킬로 기준 존재

동법 시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1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1. 영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2. 제171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3. 제1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 가. 제116조의2제1항 및 별표 20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 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제14조제6호가목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로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개인이 취미로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초경량의 드론의 경우 그 무게가 1킬로그램이 채 되지 않으며 크기 또한 성인의 손바닥 정도로 작은 제품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대중의 드론에 대한 접근성 저하

동법 시행령 제1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2. 계류식(繫留式)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계류식 무인비행장치
3. 낙하산류
4.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5.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人回轉翼)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유인자유기구
4. 동력패러글라이더
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

가 7미터 이하인 것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동력비행장치

2. 회전익비행장치

3. 동력패러글라이더

4.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14조제6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나. 제14조제6호나목에 따른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

6.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개선방안

○ (1안) 드론 특별법 제정

- 현재 드론산업은 기존의 화물운송 및 인구수송을 위한 항공기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 항공법과는 맞지 않는 특성을 가짐
-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된 패러글라이더 등과 같은 다른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1인의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행을 위해서는 장소적 제약이 크게 따르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소형 무인비행장치인 레저용 드론의 경우 비행을 위한 장소적 제약을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음

○ (2안) 항공법 개정

- 특별법 제정이 법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시간을 상당히 요하는 바, 빠른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드론 산업을 규제하는 항공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 가능함
- 우선 법률적 측면에서 캐나다의 변화된 드론 제재기준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된 기준이 필요함. 법률적으로 2킬로그램 미만과 같은 명시적인 무게, 크기 및 용도 기준을 두어서 비행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인 레저용 드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적 제한을 걷어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바, 우선적으로 개인레저용 드론인 초소형, 초경량 드론의 경우를 명시하여 정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에 비행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참고

- 캐나다의 경우 소형 드론의 경우 그 부피, 무게, 용도에 따라 세부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여 소형 드론 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드론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

〈표 6-5〉 캐나다 교통국이 발표한 소형 드론 규제 내용

구분		2kg 미만의 소형 드론	한정된 운용이 가능한 25kg 미만의 드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5kg 미만의 드론
제품요건	식별 정보 부착	필요	불필요	불필요
	등록	불필요	필요	필요
	표준화된 디자인	불필요	필요	필요
조종요건	연령 제한	없음	있음	있음
	조종 수준	기본 수준	기본 수준	전문가 수준
	파일럿 자격증	불필요	불필요	필요
	프라이버시 규제	적용	적용	적용
비행요건	야간 비행	불허	불허	허용
	비행장 근처	불허	불허	허용
	도심 9km 내	허용	불허	허용
	사람들 위	불허	불허	허용
	보험관련 법적책임	없음	있음	있음

출처 : Transport Canada,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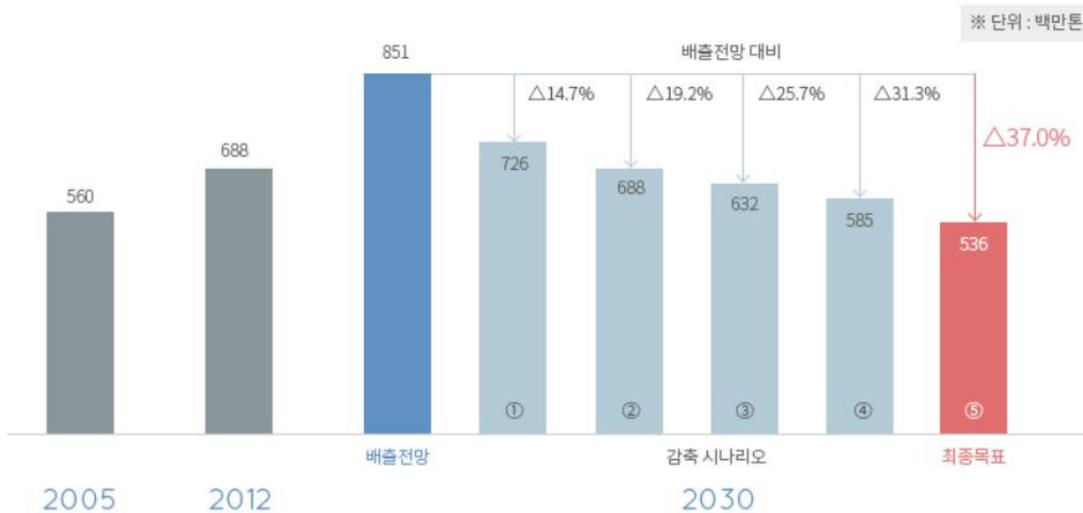
제7장 자원활용과 환경규제

1. 탄소자원화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 재정비

□ 규제 법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현황

- 2015년 12월 新기후체제 출범(파리협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된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5억톤) 대비 37%인 3.1억톤을 감축목표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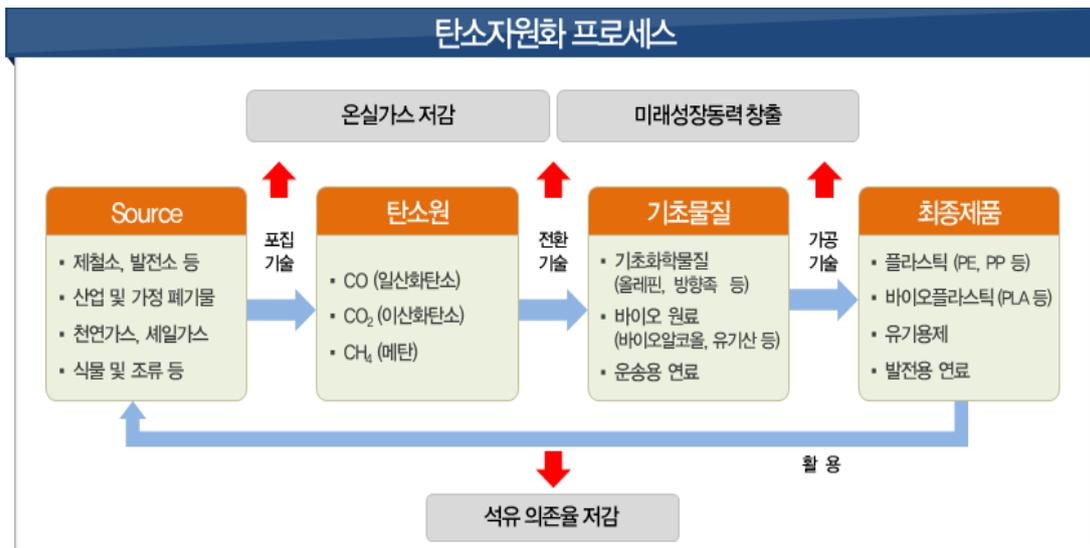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그림 7-1]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19세기 후반 산업화와 더불어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은 최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 석유화학·철강·정유 등 주력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미국 대비 석유화학 167%, 철강 118%, 정유 118%)이므로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시 해외 경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동시에 산업계의 경

쟁력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규제개혁이 요구됨

-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i) 에너지 효율의 증대, ii) 에너지 소비 감축, iii)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으로의 연료전환 및 iv) 탄소자원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다른 방안들과 탄소자원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
 - 탄소자원화란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및 부생가스를 우리 생활과 산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화학제품과 연료로 자원화하는 기술 혁신 개념을 의미함
 - 탄소자원화 프로세스를 통하여 석유 의존율을 낮추고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저성장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서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함에 기여할 수 있게 됨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그림 7-2] 탄소자원화 프로세스

□ 문제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고자 입법된 것으로, 동법 제2조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고 있으나 탄소자원화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동법 시행령 제2조(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	기준 및 범위	
1.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나. 범위	1) 증기 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2.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가. 기준	1) 중질잔사유(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 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을 말한다)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나. 범위	합성가스
3. 바이오에너지	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1) 또는 2)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나.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 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맥각,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4.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1)부터 3)까지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가. 기준	물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5. 수열에너지	나. 범위	해수(海水)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탄소자원화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는 CO, CO₂, CH₄를 재활용하여 생성된 것으로 재생에너지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신재생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신재생에너지법 제5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의 혁신적 보급 확대를 논하고 있으나 탄소자원화 과정에 대한 정책적·경제적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4.9.)의 보급목표: (2020)5.0% → (2025)7.7% → (2030)9.7%

□ 개선방안

- (1안) 신재생에너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법의 적용대상인 재생에너지에 탄소자원화 과정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포함시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법률 기반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p>제2조(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를 말한다.</p> <p>[별표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1. ~ 5. (생략) 6. (신설)</p>	<p>제2조(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제6호에 따른 탄소자원에너지-----.</p> <p>[별표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1. ~ 5. (현행과 동일) 6. 탄소자원에너지 가. 기준: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산업원료로 재활용하는 탄소자원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나. 범위: 배출된 온실가스를 포집·전환 하여 생성된 기초화학 원료, 바이오 원료 및 운송용 연료 등</p>

- 위와 같은 개정으로 탄소자원화 과정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본계획 수립(제5조), 투자권고(제12조), 공급의무화(제12조의5), 연료 품질검사(제12조의12), 기술의 사업화(제28조), 에너지센터의 설립(제31조)에 관한 규정 등이 모두 적용되도록 함
- 탄소자원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탄소자원화 기술개발에 대한 법률 제도상의 지원이 이루어져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2안) 별도로 「탄소자원화 육성법」을 제정하여 탄소자원화의 전 프로세스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두어 탄소자원화의 육성을 촉진함

2.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간소화

□ 규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4 관련

□ 현황

-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화학물질 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공정위험성 및 사고가능성에 따라 고위험도·중위험도 및 저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여부 등을 적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조정 필요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조정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9조제2항 관련)

1. 기본 평가정보

가.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취급량 및 유해성 정보

- 1)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은 물질안전자료(MSDS), 개별시설 및 장치별 해당 유해 화학물질의 최대 저장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취급량은 그 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을 작성한다.
- 3) 유해성 정보는 일반정보(물질명, CAS 번호, 조성농도),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취급시설의 목록, 명세,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1) 취급시설의 목록은 동력기계 목록, 장치 및 설비, 배관 및 개스킷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취급시설의 명세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가) 동력기계번호, 동력기계명, 주요재질 분류기호, 취급량 혹은 처리 능력, 방호장치종류 등 동력기계 정보에 관한 사항
 - 나) 취급 혹은 저장량, 기기번호, 기기명, 사용재질 분류기호, 개스킷 재질, 용접 여부 등 장치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다) 배관 재질 및 분류 코드, 유체의 종류 또는 이름, 사용 재질 분류기호, 개스킷 재질 등 배관 및 개스킷에 관한 사항
- 3)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가) 운전조건, 반응조건, 이상반응 및 그 대책 등 공정개요에 관한 사항
 - 나) 주요 동력 기계, 장치,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에너지 및 물질수지(Material Balance),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기타 단위공정을 구분하는 자료(긴급차단밸브 등) 등 주요 기기의 취급·저장량을 포함한 공정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 다)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다만,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다.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 1) 취급시설 입지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가) 건물 및 설비 위치,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 건물과 단위 설비간의 거리 등 전체 배치도(Overall Layout)에 관한 사항

나) 기기의 설치 높이, 각 단위설비와 단위설비간의 거리 등 설비배치도 (Plot-Plan)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는 사업장 주변지역의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등 시설물의 위치도 및 명세, 주민분포, 자연보호구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기상 정보

기상정보는 월별 평균 온도, 습도, 대기안정도, 풍향, 풍속과 지표면의 굴곡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장외 평가정보

가. 공정 위험성 분석

공정 위험성 분석은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위험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 사고예상 질문 분석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이상위험도 분석 기법,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원인결과 분석 기법, 예비위험 분석 기법 중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작성한다.

나.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1) 사고 시나리오는 기본 평가정보, 공정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하여 도출된 사고 발생 시나리오(안전성 확보 방안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포함한다)를 분석하여 작성한다.

2) 사고 가능성은 동일 또는 유사시설의 국내·외 사고 발생빈도 등을 분석하여 작성한다.

3) 위험도는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과 사고 가능성을 곱하여 작성한다.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는 위험도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건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의 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라. 안전성 확보 방안

안전성 확보 방안은 다목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잠재적 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일련의 대책을 작성한다.

3. 타법과의 관계 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 등록, 허가와 관련된

타 법령 및 규제 내용을 작성한다.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대상과 중복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자는 제1호가목·나목,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사본과 제1호다목·라목, 제2호나목·다목·라목, 제3호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제2호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 대상과 비용
- 규제대상은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업체
 - 사업장 외부의 영향이 적은 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업체도포함(미국의 경우 77종의 주요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장외영향평가를 의무화)
- 일부 물질 및 시설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위해관리계획서, 안전성향상계획서 등과 중복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르면,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유해·위험설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 이상과 같이 유사·중복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작성 의무로 인해 관련 사업자는 행정 및 비용

부담 가중

- 관계부처 담당자의 심사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일관된 시설 관리 곤란
- 동일 시설에 대해 서로 다른 관할관청이 중복 점검하고, 법 위반 시에는 중복 처벌

□ 개선방안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상 물질 및 시설의 명확화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량 등을 명시
 -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또는 미국 청정대기법에 의한 규제물질 77종과 유사하게 명시 필요
- 면제 규정 마련
 - 중복 규제 대상 물질 및 시설에 대해서는 중복 규제를 받지 않도록 면제
 - (예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9 참조하여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규정 및 작성 내용의 표준화
 -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및 작성 내용을 표준화

제8장 과학제도 정비

1. IR52 장영실상 심사 및 포상 운영규정 개선

□ 규제 법률 : IR52 장영실상 심사 및 포상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3호)

□ 현황

IR52 장영실상 심사 및 포상 운영규정 제6조 (신청 및 추천) ① 포상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신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IR52 장영실상 신청(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제품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개발책임자 이력서 (사진 첨부)

4. 개발참여자 인적사항 (별지 제3호 서식)

5. 제품카다로그 또는 사양서 (있는 경우에 한함)

6.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사본 (있는 경우에 한함)

7. 사내 또는 외부기관의 제품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8. 외부기관 또는 수요처의 품질인정서 (있는 경우에 한함)

9. 그 밖에 대상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에 한함)

※ 각 원본 1부, 사본 10부

② 추천시에는 ① 항의 규정으로 같음한다.

□ 문제점

○ 장영실상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 규정보다 더 많은 제출 자료 요구

○ 온라인 신청 시에는 IR52 장영실상 심사 및 포상 운영규정에 없는 ① 판매개시일 입증 자료(세무·회계서 날인받은 최초 매출사실 확인자료), ②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입증서류(세무·회계서 날인받은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중소기업 확인서 등), ③ 신청서 요약파일

□ 개선방안

- (1안) 규정에 없는 필수 자료 요구 삭제 개선 필요(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안) 불가피하게 필요한 자료라면, IR52 장영실상 심사 및 포상 운영규정 규정 내 추가 개선 필요. 다만, 세무·회계 시 날인 받아야 한다는 입증 자료의 과도성을 판단하여 적절하게 추가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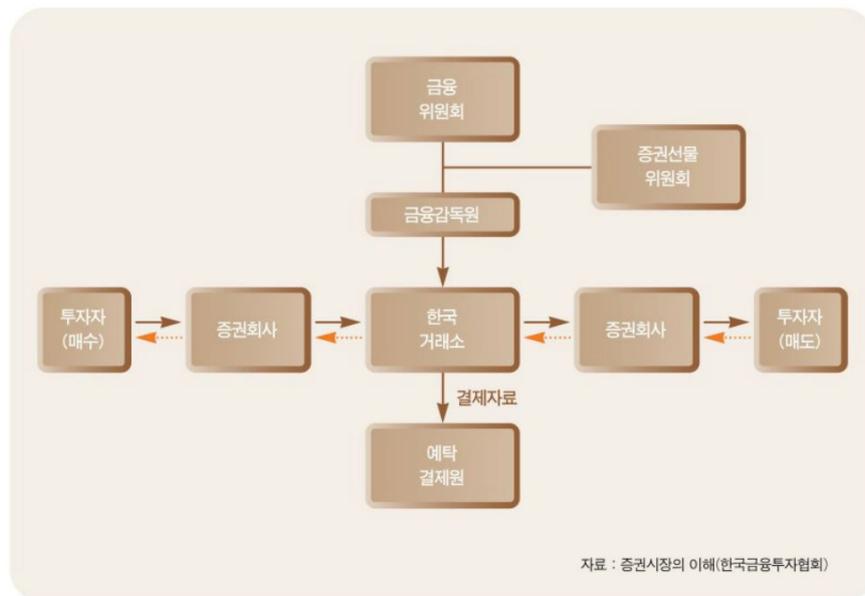
2.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통지 규정 개선

□ 규제 법률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조

□ 현황

○ 한국거래소

- 2004년 1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제정되고, 통합실무작업을 거쳐 2007년 1월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
- 2009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로 개명



[그림 8-1] 증권시장의 구조

-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거래소 허가를 받아 시장을 운영하며 금융감독원*이 감독

*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

○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종류

- (1) 유가증권시장(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증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유통
- (2) 코스닥 시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System) : IBCT(IT, BT, CT)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거래함. 1996년 7월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 시장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
 - 첨단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NASDAQ) 시장을 본떠 만든 것으로, 유가증권 시장과는 규제 조치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시장
- (3) 코넥스 시장(KONEX, Korea New Exchange) : 초기 중소기업 지원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이 개설된 중소기업전용 신시장
 -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2013년 7월 1일 개장
 -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의 3분의 1~10분의 1 수준이 충족 조건
 - 대부분 은행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은 낮은 수준
 - 기업정보 공시체계가 미숙한 편이며 시장의 절반 정도의 기업에서만 거래가 존재하는 등 시장양극화 현상 및 자금조달력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 발생
- (4) K-OTC(Korea Over-The-Counter) 시장 :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장외시장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절차

상장예비심사



[그림 8-2] 코스닥 상장 절차

- 상장예비심사의 단계에서 거래소가 상정적격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게 됨
 - 해당 단계에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 근거한 실질적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며 이후 심사 결과를 상장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함
 - 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를 심의하며 거래소는 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해당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음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재무요건으로는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00억원 이상이면서 시가총액은 300억원 이상(공모가 기준)과 같은 비교적 엄격한 재무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 상장주관사가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추천한 기업의 경우 기존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재무기준이 아닌 특례상장 제도의 재무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이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자본 잠식률 10% 미만 요건을 만족하면 됨
 -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기준이 높음
-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인 코스닥시장이지만 거래소의 예비심사단계에서의 진입장벽이 높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임에도 주식상장이 불허되어 자금조달 및 기업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발생함
-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인 툴젠의 코스닥시장 상장 미승인 건이 있음
 - 제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을 보유한 국내유일의 주식회사 툴젠의 경우 현재 국내 코넥스 시장에만 상장되어 있는 상황임

크리스퍼 기업 경쟁 상황

기업명	상장일	특허 등록
에디타스 메디신	IPO 나스닥, 16년 2월	○
인텔리아 테라퓨틱스	나스닥, 16년 5월	×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나스닥, 16년 10월	×
툄젠	코넥스, 14년 6월	○

출처: 서울경제신문

[그림 8-3] 크리스퍼 기업 경쟁 상황

-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보유하였음에도 코스닥시장 상장 곤란함
-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보유한 거래소는 통합된 거래소인 한국거래소 하나 뿐이기
에 어느 주식시장이든 상장 여부는 거래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임

□ 문제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 제3항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
- 결과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통지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동조 제4항에는 통지문서의 서식은 세척에서 정한다고 되어있으나 세척의 별지 및 서식
모음에는 통지문서의 서식은 존재하지 않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상장예비심사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결과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일부터 45일(적격 해외상장외국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경우 65일) 이내에 세척으로 정하는 날까지 금융위원회,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척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서의 서식은 세척에서 정한다.**

⑤ 거래소는 제6조제1항제19호의 상장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성·시장성·수익성·경영성 및 재무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별 특성에 따른 심사항목의 우선순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⑥ 거래소는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성 등에 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전문가집단의 자문결과를 상장심사시 반영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기술성 등의 반영, 제6항의 전문평가기관 및 전문가집단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생략)

⑨ 상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 결론적으로 규정의 해석상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의 결과를 문서로만 기업에게 통지하면 되는 상황임
 - 미승인의 사유를 적시한다 하여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정·시행세칙 및 지침에서 어느 기준에 불충족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통지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입증에 어려워 심사결과 반복은 현실상 불가능함
- 거래소의 통지와 관련하여 상장폐지 통지에 관한 1심 지방법원 결정이 있으며 해당 결정문에서 거래소 결정의 사유와 근거를 서면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거래소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결정을 방지하는 한편, 당해 기업에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 거래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또는 사법적 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서울남부지법 2009.6.15. 자 2009카합613 결정)
 -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에서 그 통지에 관하여 결정사실, 사유와 주요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의 경우 '통지문서의 서식은 세칙에서 정한다'는 규정 외에는 통지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음
- 상장폐지의 경우 이루어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상장예비심사의 경우 이루어지는 심사의 경우 심사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구분되지 않음에도 통지규정은 양 심사에 있어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개선방안

- 자본금 유치가 시급한 스타트업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자본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되므로 기업성장을 위하여 필수적
 - 상장심사 미승인 시 처음부터 다시 상장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의신청제도를 실효화 시킬 수 있도록 통지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

- 만약 분쟁해결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이의신청절차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통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선 필요
 - *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이기에 실질적으로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하여도 거래소가 제정한 각종 시장 규정은 행정기관의 법규명령이라 볼 수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심판절차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하며, 거래소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 또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아야 함
- 법원 또한 통지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이의신청단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장규정에 위배되어 이에 더 잡은 거래소 결정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이 존재 (서울남부지법 2009.6.15. 자 2009카합613 결정)
- 미승인 근거규정 및 요건불충족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통지규정을 개정
 - 그에 따라 기업은 상장을 위하여 보완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 차후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며 시장 상장의 진입장벽 또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또한 이의신청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구제가 되도록 실효화 가능
- 따라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 제4항의 통지 서식 부분을 삭제하고 코스닥시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1조 제3항 3호와 같이 상장예비심사 미승인 통지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개정

현행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선안
제8조(상장예비심사등)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 <u>문서</u> 의 서식은 세칙에서 정한다.	제8조(상장예비심사등)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 <u>중 미승인 통지는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 사실, 상장예비심사의 미승인 사유와 주요 판단 근거 및 규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 [참고]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판시사항】

[1]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유가증권 상장신청법인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 및 그 상장폐지결정의 법적 성질

- [2]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 [3]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을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
- [4]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내지 상장폐지결정은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2]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 증권거래법이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제정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자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상장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1], [2]의 판결원문) 피고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피고에 의한 상장폐지 내지 상장폐지결정은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를 해소하려는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88조 제2항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그 상장규정에 정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피고의 유가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고만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성격을 주식회사로 규정한 이상 이를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대신 증권거래법이 자치적인 사항을 스스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제정된 피고의 자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장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다수의 상장신청법인과 사이에 상장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즉 약관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피고와 상장법인 사이의 관계가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맺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됨과 아울러 피고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률상의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시장을 운영함에 필요한 상장규정을 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주식을 유가증권 거래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피고가 개설한 거래시설에서 피고가 정한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피고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제85조), 결국 위 상장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니만큼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의 형성 및 안정과 원활한 유통이 피고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 제1항) 피고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제정한 유가증권상장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는 없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2003. 1. 1. 시행)의 상장폐지규정은, 그 규정으로 달성하려는 ‘부실기업의 조기퇴출과 이를 통한 주식시장의 거래안정 및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과 위 조항에 따라 상장폐지될 경우 그 상장법인과 기존 주주들이 상실할 이익을 비교할 때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고, 또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선택한 기업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에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한다. 아울러 위 상장폐지규정은 회사정리절차를 선택할 경우에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기한 회생의 기회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회사정리절차를 통하여 조기에 부실을 종료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실상 구 회사정리법상 보장된 회사정리절차를 밟을 권리를 현저히 제약하는 것이어서,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회사를 정상화하도록 하려는 구 회사정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위 상장폐지규정은 무효이다.

서울남부지법 2009.6.15. 자 2009카합613결정[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판시사항】

-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상장폐지의 사유와 근거를 당해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 및 그 통지에 명시 또는 적시하여야 할 내용과 정도
- [2]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통지에 상장폐지 근거 규정과 상장적격성에 관한 사유만을 명시하였을 뿐 당해 기업이 어떠한 행위로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은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에 터잡은 상장폐지 결정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이, 자구이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재무구조의 개선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달 자금만으로도 자본 관련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할 수 있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상장폐지 결정을 할 때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행위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중에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 상장폐지 결정 통지를 받은 기업에 그 결정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피보전권리가 있고, 가처분으로 주권 정리매매절차의 진행 등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를 당해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상장폐지가 당해 기업에 미치는 심대한 불이익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가 스스로 자신의 결정 과정과 내용을 검토하여 보게 함으로써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결정을 방지하는 한편, 당해 기업에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 당해 기업 등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또는 사법적 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상장폐지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규정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당해 기업이 어떠한 사실로 인하여 그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를 빠뜨린 하자는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통보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

[2]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

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장폐지 심사대상 기업에 한 상장폐지의 근거 및 사유의 통지가, 상장폐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상장적격성에 관한 사유만을 명시하였을 뿐 당해 기업의 어떠한 행위를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적시하지 않아 위 기업으로 하여금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이의신청단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과 이에 터잡은 상장폐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자구이행이 재무구조의 개선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기업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현행 상장규정은 상장폐지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령 상장적격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장폐지를 시킬 수 없다), 둘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이 없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이, 자구이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중 일부를 재무구조의 개선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인정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달 자금만으로도 자본 관련 상장폐지요건을 해소할 수 있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상장폐지의 사유와 근거를 당해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그에 대하여 당해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장폐지 결정을 할 때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행위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중에 추가하는 것은, 당초의 사유와 추가된 사유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6] 상장폐지 결정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므로 그 결정의 통지를 받

은 기업은 그 효력을 다룰 피보전권리가 있고, 나아가 해당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폐지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그 기업의 경쟁과 자본잠식 상태의 해소에 적극 협조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기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의 자발적 의사와는 별도로 가처분으로써 그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제11조(상장폐지 여부 등 결정 및 통지) ① 거래소는 제10조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소는 개선기간 중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중간 점검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③ 거래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해당 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상장유지 결정 사실 및 주권의 매매거래재개에 관한 사항
2. 개선기간 부여 결정 사실, 개선기간, 개선기간 부여에 따른 실질심사 절차 및 매매거래정지에 관한 사항
3. 상장폐지 결정 사실, 상장폐지의 사유와 주요 판단 근거 및 규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별표1] 질적 상장심사 기준표

시장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 잠재력
	시장 경쟁상황
수익성	비용의 우위성
	매출의 우량도
재무상태	재무 성장성
	재무 안정성
	재무자료의 신뢰성
기술성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인력의 수준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경영성	경영진의 자질
	인력 및 조직경쟁력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독립성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 [별표7] 질적심사기준

① 영업, 재무상황, 기술력 및 성장성, 그 밖에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심사항목	중점 심사사항
영업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의 성장주기, 시장규모, 경쟁상황 및 진입장벽 등 산업 성장성 및 변화 추이 · 산업의 국내·외 규제환경 및 정부 정책 영향 · 과거 매출액 및 이익의 변동요인, 향후 매출액 및 이익 변동 가능성 · 주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 및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규모와 관리체계의 적정성 · 주력 제품의 경쟁력 저하 및 수주 감소 등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수익성 하락 가능성
재무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업계 및 경쟁기업과 비교한 재무안정성 수준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규모 및 추이를 감안한 유동성 현황 · 우발채무로 인한 재무상황의 악화가능성
기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기술인력 수준, 기술의 완성도 및 경쟁우위도 등 기술력 수준 ·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기타 경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경영권 등과 관련한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공모자금 사용계획 및 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 경영진의 사업전략 등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②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전 주식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이 인정될 것

심사항목	중점 심사사항
기업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통한 주요 의사결정의 독자적 수행 여부 ·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상장신청인의 이익에 반하는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중대

심사항목	중점 심사사항
	한 도덕적 흠결 존재 여부
내부 통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운영규정 등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 수준 ·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된 중대한 오류 및 특이사항 여부 · 상장신청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임원 선임, 경영성과 보고체계, 경영계약 체결 등 자회사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
공시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규의 제반 공시의무(최대주주가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경영상 주요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포함)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조직 구축 여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공시체제 구축 여부
이해관계자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배경, 조건, 절차 등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한 이해관계자 거래 조건의 타당성
상장전 주식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전 주식거래의 필요성, 절차의 적법성, 거래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주주이익의 침해 가능성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여부
경영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등(명목회사인 경우 그 실질적인 지배주주 포함)의 안정적 지분 보유 여부 ·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경영진 변동, 사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연속성 유지 여부 · 구주매출이 있는 경우 상장신청인의 자금조달수요 및 안정적 경영권 유지 여부 등을 감안한 구주매출의 적정성

③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심사항목	중점 심사사항
투자자 보호 및 시장건전성 저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 누락 여부 ·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상장법인 경영권을 매각 또는 인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동 과정에서의 시장건전성 저해 여부 ·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가능성

◦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 [별표2]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표

1. 개별적 요건

심사항목	주요 심사기준
불성실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한 공시내용이 시장 및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 해당 법인의 고의, 중과실 여부 - 해당 법인의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 여부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의 사유 - 해당 법인의 계속기업 가능성 유무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신고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 허위신고 내용이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 해당 법인의 고의, 중과실 여부 등

2. 종합적 요건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
(1)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 의 계속성	가. 영업의 지속성	
	· 매출의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또는 이익규모, 추이 등 영업활동 악화로 인한 매출의 계속성 여부 -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격, 투자규모, 수익창출시기 등을 고려한 매출 지속성 여부 - 영업활동 개선 계획으로 인한 매출 회복 가능성 여부
	· 수익성 회복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영업활동의 현저한 악화로 발생한 손실규모 및 향후 손실 지속여부 - 대여금, 타법인주식 등 영업외 손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 영업활동 개선계획으로 인한 수익성 회복 가능성 여부
	나. 재무상태 건전성	
	· 재무상태 취약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 만기구조,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한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발생 가능성 여부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규모 및 추이 등을 감안한 유동성의 악화 가능성 여부 -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잠식의 정도, 추이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 또는 이익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여부
	·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령·배임 등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횡령·배임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 분식회계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우발채무의 실현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여부 특히, 경영권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 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 성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관련여부, 횡령·배임 금액의 크기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기타 불법행위 전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의 안전성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의 안정적 지분 보유 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연속성 유지 여부
	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내부통제제도 훼손여부 이사회운영규정, 감사규정, 회계규정 등 내부 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내부통제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처리 불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 최근 3년간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중대한 오류 및 특이사항 여부 분식회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가능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위반 행위의 반복성 및 위반 내용의 중요성 여부 공시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시체계 개선가능성 여부 	
(3) 기 타	가. 투자자 보호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경영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심사항목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준하는 사유로서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적격성 인정 곤란한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상장예비심사등) 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이하 “상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상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의3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2.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외국기업

② 제1항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청구 등이 있는 경우 지방벤처기업 및 세척에서 정하는 수출우량기업,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에 대해서는 세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심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결과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일부터 45일(적격해외상장외국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 및 국내 소재 외국지주회사의 경우 65일) 이내에 세척으로 정하는 날까지 금융위원회,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척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문서의 서식은 세척에서 정한다.

⑤ 거래소는 제6조제1항제19호의 상장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성·시장성·수익성·경영성 및 재무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별 특성에 따른 심사항목의 우선순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거래소는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성 등에 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및 전문가집단의 자문결과를 상장심사시 반영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기술성 등의 반영, 제6항의 전문평가기관 및 전문가집단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⑧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이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48조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행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3.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
- ⑨ 상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8조(상장예비심사 등) ① 규정 제8조제2항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수출우량기업”이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당해 기업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벤처기업을 말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지정법인”이라 함은 제7조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규정 제8조제2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우선 심사함을 말한다. 다만, 규정 제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법인이 없는 경우 : 차기 심사대상 법인의 100분의 20
2. 지정법인이 있는 경우 : 차기 심사대상 법인의 100분의 30. 다만, 지방벤처기업 및 수출우량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며, 지정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규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규정 제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이하 “신속이

전기업”이라 한다), 규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속합병 상장기업(이하 “신속합병상장기업”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요건을 충족하는 우회상장 대상 주권비상장법인 및 규정 제7조의3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합병대상법인으로서 제19조의4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 30일

2. 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의2 단서에 따른 적격해외상장외국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65일

3. 제1호·제2호 외의 법인 : 45일

④ 규정 제8조제3항 단서 전단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상장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2. 심사기간 중 영업활동의 중지,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재해발생 또는 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단기간에 예비심사청구기업이 급증하거나 상장위원회 심의가 연장되는 경우 또는 재무제표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상장위원회 심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상장위원회 개최일까지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통지 연기기간은 예비심사청구일로부터 45일이 되는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상장위원회 정기심의일까지(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5. 신규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외국기업(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상장주선인이 해당 상장폐지사유가 공시등을 통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기업 주권의 신규상장을 주선(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통지 연기기간은 1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3. 한국거래소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

□ 규제 법률 :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조 제2항

□ 현황

- 이의신청의 강화상 의미 :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당해 행정청에 다시금 불복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강구하는 제도로,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심사청구와는 구별됨⁶⁾
 - 같은 맥락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본격적인 권리구제로 나서기 이전에 처분청에게 그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환기시키고 처분청은 그에 대한 재고를 통하여 자신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제도로 이해하기도 하나⁷⁾, 실정법상 용어와 강화상의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진 않음⁸⁾
- 한국거래소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는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음
 -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거래소 등이 하나의 거래소로 통합되어 국내 주식시장을 운영하는 등 그 공익적 성격이 강함
 - 대법원 또한 한국거래소가 주식회사이나, 거래소의 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는 없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
- 상장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는 한국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중요한 절차이며, 한국거래소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 내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 개선은 기업의 주식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에 기여할 것임
 - 특히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세워진 중소 IT, BT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투자금 유치를 위해 코넥스 시장 상장한 뒤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는 추세임
 - 코넥스시장은 시장참여자는 정보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보다 저조하며 투자금 유치에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임

6) 김용섭,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2015.7, 행정법연구(42), 82p

7) 김용섭, 전계논문, 82p

8) 김용섭, 전계논문, 83p

□ 문제점

-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을 위해서는 재상장법인 혹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이상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함(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 제1항)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조(상장예비심사청구) ①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상장 또는 재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법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신규상장 또는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신청전에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정법인(제4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과 상장예비심사청구전에 상장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1. ~ 3. 삭제
4. 재상장법인(제2조제6항제2호에 한한다)
5.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6. 삭제

- 코스닥시장의 경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성장잠재성이 높은 과학기술분야 스타트업이 상장하는 경우가 많음
 - 대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코넥스시장에 우선 상장 후 자금조달이 용이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추세임
- 상장 여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거래소에 있으며 상장예비심사단계에서의 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상장여부가 확정이 되는 상황임
 - 규정 상 이의신청 가능 기간은 7일 이내로 짧아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기업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이의신청 절차규정은 형식상 절차조항에 불과하여 실제 기업이 이를 통해 구제를 받는 등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임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조(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은 상장주선인을 경유하여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상장예비심사결과외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상장주선인이 거래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외에 이의신청 및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동조 제3항, 제4항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시 거래소는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할 뿐 거래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동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고 ‘거래소는 그 심의·의결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결과통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결과적으로 심사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1조(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 ②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거래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2. 상장주선인의 소견서
 3.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서류
 - ③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대상기업의 대표자에게 1회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거래소는 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신청인은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재차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통하여 기업은 거래소 결정에 불복함에 대한 합당한 근거 및 자료를 제시할 충분한 시간이 없으므로 단지 불복의 의사표시만 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거래소 결정의 재고란 불가능 함
- 상장예비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정되어 있으며 ‘45일 혹은 65일 등 한달 이상’으로 비교적 긴 편이며, 해당 규정 단서에 예외사항으로 기간 연기에 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조(상장예비심사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재심사를 포함한다)결과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일부터 45일(적격해외상장외국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 및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의 경우 65일) 이내에 세척으로 정하는 날까지 금융위원회,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및 그 밖에 세척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유와 예상처리기간을 명시하여 당해 법인 및 상장주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이에 비하여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의 근거법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시 동 법률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이의신청) ① 제420조제1항·제3항, 제421조제1항·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상 이의신청 기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장

현행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선안
<p>제 10조(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은 상장주선인을 경유하여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p>	<p>제 10조(상장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 ----- ----- ----- -----</p>

<p>상장예비심사결과의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상장주선인이 거래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p>	<p>-----.</p> <p>② -----</p> <p>-----</p> <p>-----30일 이내</p> <p>-----.</p>
---	---

제9장 전문기관효율화특위 지원을 통한 기관 규제 사항 등 발굴

1. 개요

- 전문기관효율화 특위 간담회 개최 지원
-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기관방문
 - (추진배경)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효율적 재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전문기관 방문 추진

2. 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성과평가방식) 범부처적 공통된 통일양식 및 통일기준 필요
 - 기관별·부처별 시스템으로 연구관리 효율성 저해
 - 부처별 연동·협업이 효율화의 핵심
- (재정효율화) 복수부처의 유사중복과제의 경우 범부처적 정부중심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
- (전문기관 업무 간소화) 공동관리규정으로 간소화된 공동양식 사용 중
 -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제별, 사업별 특성 반영 필요
- (연구자 인적사항 연동) 부처마다 각기 다른 시스템 사용과 엄격한 입력사항 요구 등으로 입력 및 연동에 애로사항 발생
 - 입력된 인적사항의 진위여부 판별 불가능하다는 맹점 보완 및 특성화 고려된 통일적 정비 필요
- (공동관리규정) 공동관리규정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의 선행 필요

- 부처마다 규정 및 법률이 상이하어 좀 더 세밀한 공동규정 필요
- 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 또한 전문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정성 및 전문성이 문제

□ (정리)

- 공통된 규정사항 준수 필요하지만 부처별·사업별 특성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자 입력사항 등 과하게 요구되는 현 상황의 개선 필요
- 공공개혁의 관점에서 전문기관 효율화가 진행되어야 하며,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공통서식 등 효율화 방향 1, 2단계를 설정할 계획
- 성과평가방식은 숫자로 보이는 성과보다 질적인 성과 중시 부탁

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전문기관효율화)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관리기관의 기획능력 제고를 통한 성과 확산을 위하여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부처 간 통합 매뉴얼이 필요
- (부처협력) 현 다부처 사업 외에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점검 필요
- (기관 애로사항) 부처나 연구자의 요구 처리에만 업무 집중이 되어 전문기관의 주 기능이 '연구 관리'에서 '연구 지원'으로 전도
 - 현재 평가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형식적인 관리시스템 하에서는 전문성이 약해지는 필연적 결과 발생
- (서식 간소화)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부처와 연구자 사이를 잇는 가교와 같은 전문기관 고유의 역할 부여가 필요
- (과제 비율-농기평) 예산 및 기획 규모가 커 파급효과도 큰 탐다운이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바텀업의 경우 성과 성공률이 낮으며 성과 도출 실패 시 위험부담이 증가
- (공공기술의 강화) 인프라 측면에서 공공기술과 같은 필수적인 연구의 경우 예산 및

수익성에 상관없이 해야 할 부분

◦ 가능성 있는 과제에 집중하여 하나라도 제대로 된 성과 낼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

※ 농기평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이 특히 중요하며 해외동향의 종자사업의 경우 과제 중요성에 비해 배정된 예산이 적으며, 질병 및 재난 관련 농림과제들의 경우 18개의 계속과제에 73억이 배정되어 과제 하나당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데 필요한 성과를 내기 위한 예산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

□ (정리) 공동관리규정 마련 시 과제별·사업별 전문성을 고려하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

◦ 거버넌스 및 권한 차원에서의 독립성 보장 문제 해결안 고민

※ ① 기재부 독점의 경영평가권을 타부처 및 전문기관에도 분배 ② 다부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전문기관의 예산 관리 기능을 총리실 산하로 배치

4. 보건산업진흥원

□ (바이오 분야 R&D 조정) 미래부, 복지부, 산자부별 연구영역 별도 수행으로 상호 업무 연계 불가능한 구조로 미국 NIH 또는 일본의 모델 적극적 참조 필요

□ (성과 평가) 과제 선정 및 성과평가의 효율화를 위하여 범부처적 연구자 업적정보 연계 및 논문기여율의 부처 일괄 배분 문제 해소 필요

◦ KRI 정보(대학), NTIS 정보(민간), Impact factor, 특허 정보

□ (보건의료 성과 부진 이유) 본격적인 R&D 투자 일천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영세성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최근 비즈니스 사업으로의 발전 추세는 고무적

□ (PM의 역할) 단순한 과제 선정평가 업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과 중심 및 연구기획 측면의 전문성 발휘가 필요한 시점

□ (서식 표준화) 지원 사업별 특성과 평가기준에 미흡한 표준연구계획서 서식으로 인한 대형사업 연구자 및 평가위원의 불만 제기

◦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선택항목 마련 또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수정·보완 사용 허용 필요

□ (기관 건의사항) 기술료 제도 개선 건의

- 징수 기술료의 적립금 미인정, 비영리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 제한, 기술료 사용처 지정의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사유로 기술료 제도 폐지 또는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제한 폐지 등 개선 필요

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창업 시 애로사항) 마케팅 부문 등 비즈니스 로드맵 경시 및 비 R&D 인식에 따라 예산 확보 어려움이 예상

- 관련 R&D 기획역량강화사업 예산 확대 필요

□ (중기지원사업 지원방향) 고용, 수출, 사업화 등 성과위주 및 기술경쟁력 강화로 전환 필요

- 미래부(기초원천), 산자부(산업화)와의 역할분담 등으로 단기상용화 및 매출 증대에 중점
- 미래부의 사업평가지표에 좌우되는 한계에 따라 산업생태계 구축, 성장 촉진 등의 신규 지표 개발 보완 중

□ (전문기관 경영평가) 기재부 경영평가 시 별도 그룹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부적합한 지표 개선하여 전문기관 고유지표 개발 필요

□ (기관 자율성) 부처에 대한 전문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지향

6. 한국연구재단

□ (사업관리시스템 개선) 정보자산(연구자, 평가자)의 공유와 이의 보안관리 개선 및 부처별 사업관리시스템의 통일 필요

- 외부 용역발주 형태 지양

□ (사업 추진방향) 미래부 R&D사업은 결과보다는 기초·원천 위주로 산업화와 연결하는

이어달리기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NRF의 기초원천본부와 국책본부 간 상호 긴밀한 연계가 필요

◦ 기술분야에 따른 기술수명주기 차이 및 Time-lag 문제 등에 따라 제품의 주기와 연계 및 목표지향적 연구, 중복과제 허용 필요

□ (PM의 역할) PM의 임기, 역할 및 대우 등의 미흡한 부분 보완하여 장기간 소신 있는 업무추진 보장 필요 및 내부 전문인력 양성 병행

□ (기관 조직) 여타 조직 부서에 비해 취약한 인문사회연구 분야 확대

□ (기획관리평가비 건의) NRF의 기획평가관리비 규모는 타 부처 전문기관 대비 열악한 수준(1.2%)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해소 필요

□ (성실실패 제도 개선) 성실실패 제도에 대한 국회의 예산 낭비 지적 등으로 실패의 개념정의 및 부처간 표준화된 세부 실행기준 정립 필요

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예산 배분) ICT 예산배분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예산 배분 시 인력양성 부문 확대 필요

□ (과제 기획) 연구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상향식 과제 기획 비중 확대 필요

◦ 현재 10% 정도의 상향식 과제지원 방식을 20%로 확대 목표 및 지정공모과제를 축소 완화 단계

□ (기관 건의사항)

◦ ICT 기반 융합확산, 유사 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ICT 전문기관 중심으로 타 부처 ICT R&D 기능에 대한 통합적 전담관리 필요

◦ ICT R&D 전담조직의 독립적 운영 및 법인화와 ICT R&D 지원체계의 안정화 필요

◦ SW적 연계를 통한 전문기관 효율화 필요

- 현행 NTIS는 기관간 정보공유 및 중복투자 해소에 한계로 R&D 기획, 평가관리, 연구비 관리 등 R&D 전담기관별 정보시스템의 개발·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필요
- 평가위원 공동 Pool 구성·활동 등 기관별 전문성에 대한 공유체계 강화 등

8.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전문기관효율화) 연구역량 강화 집중을 통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 성과'를 위한 관리/평가 효율화가 목적
- (효율화 방안)
 - 1단계* 연구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촉구
 - * ① 기관마다 다른 관리규정 ② 서식 간소화로 연구 환경 개선
 - 2단계 소속 부처별 사업수행 구조의 성과측면의 효율성 문제해결
 - 3단계 사업 특성 고려한 구조적 개편방안
- (RCMS 변화) 관리 및 행정단계 더 세분화되어 공급자 중심의 평가관리 체계화란 장점과 연결되나 연구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연구몰입 분산*으로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 정비 등의 방향 설정 필요
 - * RCMS 관리를 회계사 등 전문가가 담당 혹은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이 담당
- (연구비 책정) 산기평의 경우 연구비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비 책정 시 RCMS의 데이터베이스를 참고
 - 연구자 연구 몰입을 위해서는 연구비 적정성을 기계적으로 책정하기 보다는 융통성이 필요
- (서식표준화) 공통항목은 60~70%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및 기관 특성 반영한 항목 필요하기에 14개 기관 사업성격을 파악 중임
- (구조적문제) 기재부 예산 → 부처 → 관리기관이라는 구조상 제약
 - 5년 주기의 정부정책 변화에도 연구 환경 유지가 필요하나 가버넌스 자체의 한계가 있으며

이상적인 문제해결은 장기적 과제이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 고려해서 최상안 도출 중

- (사업개편의 책임) 부처-전문기관-민간 등의 조직 구조적 관점에서 전문기관이 형식적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며 정부부처 정책 틀에 제한되기 보다는 사업개편 주체의 의지표명이 중요
- (기관 개선사항) 연구비 유용 시 과제신청이 10년 제한되는 강한 패널티 부여안이 발의
 - 경영평가의 경우 기존 30~50장을 5장 보고서 제출로 개선
- (기관 애로사항) 5년마다 변화되는 정부정책으로 5년 이상의 지속적인 상품개발 지원 불가능
 - 고객지향 평가관리 3단계 변화로 평가 전문성/질 나아짐*에 반해 업무 인원 그대로, 평가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량 증가
 - * 대면 평가 시에는 발표기술에 따라 좋은 기업도 떨어지는 부작용 있었던 점 개선
- (정리)
 - 산업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전략적 배분을 통한 집중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며 공공기술의 경우 사업성이 낮더라도 필수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공공성/국가안보 등 다방면의 철저한 분석 요망
 - 공급자 관점에서 관리·평가의 장점 나열보다는 투명성 제고 등 수요자 측면의 장점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리/평가에만 치중 말고 국가미래 위해 사업진행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

9. 국방기술품질원

- (공공기술 지원) 국가필수 공공기술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 참여가 저조하므로 국가가 지원 필요
 - 국방의 경우 국가안보가 최우선 목적이며 기획의 주요사안은 기술성능 향상으로 국가안보 강화
- (평가기준) 국방 관련 R&D 평가는 전문성과 보안성이 우선적이어야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필요

- (품질보장) 보안 분야의 경우 최우선은 품질보장이므로 납품기한 우선시하는 관행 타파 및 기술도입 시 국내 환경 적용 여부 점검 필요
- (진입장벽 문제) 연구자 및 기업 체감 상 과제 진입장벽이 높으며 혁신적인 방법론을 강구하여 진입장벽 낮춰야 할 필요
 - 폐쇄적인 전문가 풀 운영방식 개선 및 기획·평가 단계의 공개 필요
- (예산분산 현황) 2015 국방 R&D 예산 2조 4300억
 - 무기개발 R&D(ADD등) : 산업부, 미래부와 나눠서 1조 500억
 - 기술개발 R&D 중 기술기획(기품원) : 4000억 중 2700억(기품원)
 - 위 4천억 중 1천억 정도는 ADD의 민군겸용사업 예산
 - 무기체계 R&D에 국민적 관심 쏠리지만 무기체계 기획은 합참 권한이며 ADD는 무기개발 및 무기체계 R&D 담당
- (기관 애로사항) 기획예산 분산된 것 애로사항이 크게 발생
 - 국방부는 기초/응용/시험/실험 및 적용까지 모든 시험개발 과정을 다 다루어서 업무 부담이 큼
 - 미래부(기초연구분야)·산업부(응용연구분야)와의 기술개발 일원화후 국방 분야에 국방부가 참여, 토의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희망
- (정리) 국방은 유지관리보수 관련 사안이 개발·기획 단계에 산입 필요

10. 환경산업기술원

- (글로벌탑 사업) 투자현황에서 가장 많은 예산 차지하며 해외 수출 통한 해외 매출내는 것이 목표로 예타의 목표치*는 달성 중

* 10년치 계획으로 처음 계획된 사업비 7820억 투자대비 80% 정도 매출

- (녹조 사업) 녹조-생태계 파괴문제는 장기적 기초 연구 및 부처간 협업이 필요

- (미세먼지 사업) 연구재단, 환경부, 미래부의 범부처 사업으로 미래부가 주관*
 - *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조 역할
- (기관 건의사항) 과제기획은 전문관리기관에서 해야 문제해결에 더 효율적이며 핵심이 슈를 다룰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희망
 - 더 높은 성과 도출이 가능한 10년 이상의 연구사업 증가 희망
 - 부처 간 대립으로 인한 비효율성 해결 필요
- (부처간 협업) 부처간 협업 애로사항 문제 인지하고 있으나 국민적 의식 향상이 우선 되어야 해결되는 장기적 문제
 - 워크샵, 오리엔테이션 등의 교육을 통해 PM에게 정책 설명 등의 정책실현 방법과 같은 자체적 효율화 방안 고민해야 할 필요
- (변화반영 노력필요) 아토피와 같은 중장기, 난제 연구의 경우에도 비전 및 성과에 대한 믿음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진행흐름이라도 보고가 요구
- (정리)
 - 내부 성과에 대한 설명 방식의 다양화 필요
 - 협업이 필요한 기관을 이후 회의에서 방안 고안할 계획

11. 산업기술진흥원

- (기관설명) 기업 지원 관련 제도·법령·예산 등의 정책지원 업무가 주요업무로 기관모토는 현장소통 중심의 사업관리
 - Keit(산기평)는 기술개발 중심, Kiat(산업기술진흥원)는 기반조성 중심
-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 2달에 1회, 실용화재단 참여
- (전문가활용) 평가위원 풀은 산업부 공동 활용 중이나 인적자원 활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기관 통합관리 필요

- (기업지원본부) 수요자 만족도 등의 경우 수요자 관점에서의 측정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만족도도 조사
- (기획방향) 과거 로드맵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으나 지적재산에 대한 고민을 우선하여 기획하는 것은 지양
 - 성과관리 분석 차원에서 환류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 고려

12. 에너지기술평가원

- (기획능력 제고) 기획을 위한 새부서 '기술정책센터' 설립하였으나 배치인원 부족
 - 기획과제를 나눠주는 관리형보다는 스스로 기획 역량 키워야 할 필요
- (공공기술 관련) 필수 공공기술에 대한 장기적 투자 및 연구로 전문기관 기능 강화 필요
- (부처별 협업) 유사중복 과제는 조정하되 다부처 협업을 통하여 성과 확산이 가능한 경우 협업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
- (정리) 시스템 연계 및 인적자원 통합·공유와 같은 전문기관 간 정보시스템 통합을 통한 효율성 강화안 고민
 - 전문가 Pool 통합·공동 구성 및 활동 등 공유체계 강화

1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전문기관효율화) 기관 통폐합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역할 전문성 강화가 효율화가 목적
- (예산검토) 국토차원 사업 조정으로 예산 정체가 있었으나 올해 처음으로 정부 출연금 보조

- 전문기관 기반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 예산 확보 능력 중요하며 기관 입장에서 큰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
- (기획능력제고) 사업 및 과제의 관리 위주로 운영 중
 - 전문기관으로서 기획능력 제고가 필요
 - 국민이 기술개발 혜택의 체감정도가 큰 만큼 장기적 과제에 대한 기획능력 필요
- (전문성 제고) 부처 산하별 기관 존재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문성 가진 기획이 필요
- (공공기술 관련) 단기적 관점에서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필수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

14. 기상산업진흥원

- (전문기관효율화) R&D 전체 효율화 관점에서 평가·관리 효율화가 아니라 성과 효율화 관점에서 살펴볼 계획
- (공공기술) 공공기관 R&D 특성 상 기상 분야의 경우 수익성을 내는 분야가 아니므로 공공기술의 성과가 중요
- (기관명칭변경) 진흥원 → 기술원 명칭 변경
 - 기술원은 R&D 수행주체가 주로 쓰는 기관명으로 연구주체와 평가주체가 같이 있는 문제 발생
 - R&D 수행기관인지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이 될 것인지 고민 필요
- (성과지표) 산업 성과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 논문·특허가 아닌 기술축적도, 기술발전 상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고민 필요
- (예산분배현황) 진흥원 관리 외의 과제는 기상청* 등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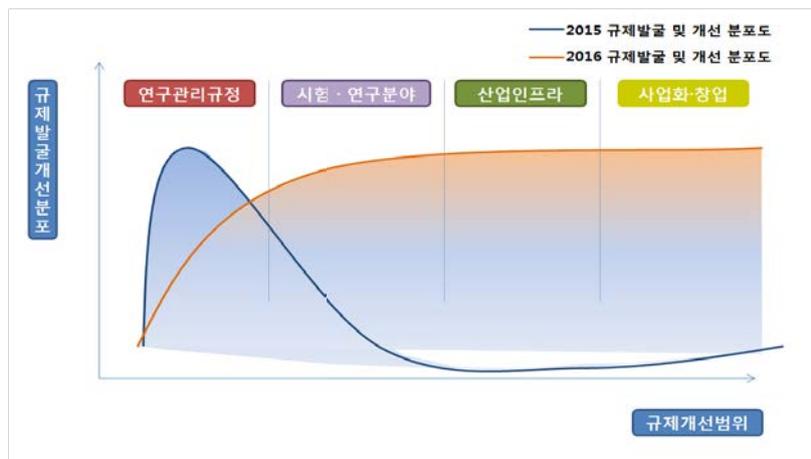
* 기상청은 환경부(3000억) 외청(1500억)으로 소속되어 있음

** 전체 과제 예산현황 상 큰 부분은 위성 관련 사업이나 타부처가 관리 중

- (인적자원 연동문제) 각 부처 연구기관 별로 연구자·전문가 풀을 구성 중이나 인적자원의 통합 관리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국가차원 효율성 증가 필요
- (기관 건의사항) 단기성과 없어서 기상산업 R&D 예산은 줄어든 상황으로 공공재 생산·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 필요
 - 기상예보 관련 2개 사업만 관리 중이나 이후 다른 기상청 전체 R&D 과제도 총괄 관리 예정을 희망

제10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016년도는 정량적인 규제개선 추진에 매진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 관련 규제 발굴을 유형별로 고르게 발굴 및 개선안 제언에 집중



[그림 10-1]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규제발굴개선분포 비교

- ‘과학기술 규제개선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수단’이라는 인식하에 매년 범정부 차원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지원
 - 지속적인 노력 결과,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등 과학기술 혁신활동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개선 문화 조성
-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기술사업화 및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개선안 제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범부처적인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 병행
- 효과적인 규제발굴을 위하여 양방향 규제발굴시스템 인프라 구축
 - 다양한 통로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상향식의 과학기술 규제개선 국민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현장 및 국민 의견 수합
 - 분야를 정해 하향식으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분석을 진행하고 규제개선작업반을 운영하여 각 분야별 현장전문가 및 산·학·연 R&D 혁신주체들의 의견을 수합 후 반영
 - 양방향 의견 수렴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렴된 의견을 분석하여 과학기술분야 내 규제개선의

현장 파급력 제고

- 규제개선 성공 창출을 증대하는 규제개선 분석 시스템 구현
 - 분야 별로 구체적인 규제개선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령 분석을 진행하여 규제발굴부터 개선안 도출까지 효율성 제고
 - 공공 및 민간 연구 현장에서 창출된 성과를 활용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달성하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환경 구축
 - 현장 전문가를 활용하여 규제 현황 및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체계화하여 발굴 규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신뢰 증진
- 다만, 부처 영역에서 과학기술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나 발굴 후 실제 개선은 각 소관 부처의 고유 영역
 - 범부처적인 과학기술 규제발굴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단계라는 구조적인 한계 발생
- 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 규제개선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등이 존재
 - 효과적인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부처 간 조율을 통한 규제개선시스템의 정비 등의 문제 존재
 - 범부처의 협조 하에 과학기술 규제개선 체계 구축을 통한 규제 발굴 및 이를 각 부처에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시에 집중 필요
- 향후 상시적으로 규제발굴 안건을 논의하는 시스템 정착 필요
 - 과학기술 규제발굴을 위한 브라운백 세미나 활성화
 -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규제 분석에 접근하기 위하여 분야·범위를 획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구 구성 주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제발굴 시스템 운영 필요
 - 법령 및 하위규정(고시, 훈령, 지침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회의 형태뿐만 아니라, 서면 등으로 관련 의견 수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참 고 문 헌

- Blind, K. (2012). The impact of regulation on innovation: Compendium of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of innovation policy intervention. Manchester Institute of Innovation Research, Manchester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Manchester.
- Koedijk, Kees, and Jeroen Kremers, “Market Opening, Regulation and Growth in Europe” , Economic Policy 11(23), 1996
-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201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 2013 규제개혁백서(2014), 규제개혁위원회
- 김유환(2011). 정부규제의 대안과 대체질서, 행정법연구 29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구해동(2008). 정책수단으로서 행정규제와 규제세, 조세법연구 14(2)호, 한국세법학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3).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기술규제 개선 방안 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7). 「정부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미치는 영향」
- 기재부 보도자료(2014.3.2.), 「OECD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주요 내용」
- 기초과학연구원(2016), IBS Reserch 6호
- 김현경(2016),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28권 제1호
- 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3), 천연화장품 산업동향 보고서
- 대한상의(2015), 2015년 국내기업의 당면애로 전망
- 백윤철(2005), 헌법상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 11권 제3호
- 산업연구원(2016), 산업경제분석
- 산업통상자원부(2015), 산업집적법 유권해석집
- 염수현 외(2014).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 유효중(2015), 연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 제공자의 권리, 「철학사상」 제58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해외 자율주행자동차 정책동향 -미국, 유럽, 일본, 해외 ICT R&D 정책동향
- 질병관리본부(2015), 대규모 인체자원 활용사업 기획연구
- 최병선(2011), 「정부규제론」, 법문사
- 한국공학한림원(2015).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규제 개선 및 정책제언」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개선 방안 연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 2014 ~ 2015 분석 - 과학기술 관련 부문 중심으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 「IMD 2015 세계경쟁력연감 분석」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각 호
- 현대경제연구원(2014.05.21.), 「현안과 과제, 규제와 경제성장 : OECD수준 상품 시장규제 개혁時 성장률 0.3%p 향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5), 위치정보서비스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연구

주 의

1. 이 최종보고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한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